

C2000-44/ 2000. 12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박 문 호 책임연구원
전 익 수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담당자	담 당 분 야
박 문 호	총괄, 제도·정책검토, 경영진단평가, 정책개선방안
전 익 수	유형별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머 리 말

농업법인은 농업법인제도가 1990년 정부의 UR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가족경영체와 함께 우리나라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육성되어 왔다. 제도 발족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농업법인경영의 성과를 살펴보면, 생산 단계에 국한되었던 농업경영 범위를 농업생산에 기초하여 가공·유통 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 농업인을 단순한 농업생산자에서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업법인은 그 동안의 양적 성장과정에서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이 부실한 사업체의 사후관리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설립되고 있는 법인의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농업법인 동향과 실태에 기초하여 농업법인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제도 및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농업법인 대표자 및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가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농림부 농촌인력과 관계자, 시·군 관계자, 한국 농업법인중앙연합회 및 법인대표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린다.

200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비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선행연구 검토 2
4. 연구범위 3
5.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제 2 장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추진현황

1.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5
2.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변천과정과 배경 8
3.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2
4. 농업법인의 설립동향 17

제 3 장 농업법인의 유형별 경영실태와 성과

1. 정책사업의 수혜실적 21
2. 지원사업 효과 24
3. 경영성과와 요인분석 28
4. 향후 의향 및 경영애로 32

제 4 장 농업법인사례 경영진단 평가

1. 경영진단의 체계 35
2. 사례업체의 경영성과 37
3. 경영 성과의 요인 40
4. 유형별 사업동향과 경영성과의 자가진단 46

제 5 장 농업법인 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1.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 52
 2. 농업법인제도 ·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56

참고문헌66

부 록

<부록 1>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사례 67
 <부록 2> 농업법인 사례조사표 73
 <부록 3>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현황 87
 <부록 4> 일본의 농업법인 조직변경 및 해산수속 매뉴얼 89
 <부록 5> 외국의 가족법인제도 96

표 목 차

<표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7
<표 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과정	10
<표 3> 농업법인 정책지원사업의 지원 요건(2000년 현재)	14
<표 4> 사업유형별 설립현황	17
<표 5> 운영상태별 현황	18
<표 6> 법인의 평균 출자액	19
<표 7> 정책자금 지원액	20
<표 8> 농업법인 유형별 사업비 규모	22
<표 9> 지원자금의 주사용처	23
<표10> 자부담 조달방법	24
<표11>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만족도	25
<표12> 정부지원후 추가투자액	26
<표13> 농업법인의 자산변동 내역	27
<표14> 정부 지원자금의 효과	28
<표15>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상태	29
<표16>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상황	29
<표17>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성과 달성 정도	30
<표18> 농업법인 유형별 융자금 상환액	31
<표19> 농업법인 유형별 향후 융자금 상환능력	32
<표20> 농업법인 유형별 향후 영농의향	32
<표21> 농업법인 유형별 영상 애로점	33
<표22> 경영장부 기록방식	34
<표23> 재무제표 분석지표	36
<표24> 사례법인의 자산 및 자본의 구성	38

<표25> 사례조사업체의 경영진단지표	39
<표26> 자본수익율 상위20% 법인의 자산·자본의 구성(1999)	42
<표27> 자본수익율 상위20% 법인의 경영분석 지표(1999)	43
<표28> 자본수익율 상위20% 법인의 자산·자본의 구성(1999)	45
<표39> 자본수익율 하위20% 법인의 경영분석 지표(1999)	45
<표30> 법인 유형별 경영성과, 문제점, 대응방향	51

그림 목 차

<그림 1> 우리나라 농업경영 주체의 제도적 지위	6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농업법인은 1990년 UR대책의 일환으로 제도가 확립되었고 특히, 1994년 “농발대책”에서 전업농 육성과 함께 경영체 육성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면서, 농업생산에 기초하여 애그리비지니스 전 분야를 포괄하는 복합산업체로 육성되고 있다.
- 법인경영은 인적자원의 전문성 확보·육성차원의 유리성, 자본조달의 유리성, 경영관리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농업생산에 국한된 가족농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대적인 경영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 그 동안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품목의 특성이나 법인의 경영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성립되어 있다. 고품질·규격생산, 대량거래를 통한 산지시장의 기능, 지역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상품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이 부실한 사업체도 발생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법인이 설립되면서 사업의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법인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2. 연구목적

-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농업법인경영의 평가를 토대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업 유형별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영농법인의 연구는 주로 법인운영 및 정책개선방향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방향제시 또는 사례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관련한 연구로서 김정호 외(1990, 1994, 1997), 김준호(1995)의 연구에서는 주로 영농조합법인제도의 도입 취지에 기초하여 협업농으로서의 성격변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특히 농산물 유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본래의 생산단계의 협업경영적 성격을 강화할 것을 주장함.
 - 지역별 사례연구로서, 이건열(1994), 유병규(1997), 배종렬(1997)의 연구에서는 지역농업에서의 영농조합법인의 역할을 중시하고 법인제도의 개선과 관련 시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위의 연구들은 대체로 법인제도의 전반적인 정책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4. 연구범위

- 본 연구에서는 영농법인 유형별 실태와 사업체의 경영 진단을 토대로 유형별 경영발전의 방향과 제도 및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5.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 제도 및 정책의 경과
 - 농업법인제도의 현황 및 변천과정
 - 정책 추진의 동향과 문제점
 - 법인설립의 동향
- 사업 유형별 법인경영의 실태와 성과
 - 정책사업 수혜실적과 지원사업의 효과
 - 경영성과, 향후의향, 애로사항
- 법인경영체 경영진단 사례분석
 - 사례 법인경영체의 경영진단
 -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성장성
 - 경영성과의 요인
 - 사업유형별 동향과 경영성과의 자가진단
- 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 방안

- 경영발전의 방향과 유형별 발전모형
- 제도·정책상의 과제와 개선방안

나. 연구방법

-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 운용실태 분석
 - 관계 법령 검토
 - 정책의 운용실태 검토

- 영농법인 경영실태 분석
 - 농업법인 개황 조사
 - 통계청 센서스 자료
 - 농업법인 실태조사
 - 농경연 농림사업 경영체 평가자료의 유형별 운영실태 및 집단경영평가(법인경영체 표본 421개소 대상)

- 사례조사 분석
 - 유형별 우수사례 및 일반사례의 경영진단분석
 - 생산형, 가공형, 유통형
 - 경영성과 요인분석
 - 경영의 자가진단 분석

제 2 장

농업법인 제도 및 정책의 추진현황

1.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 제도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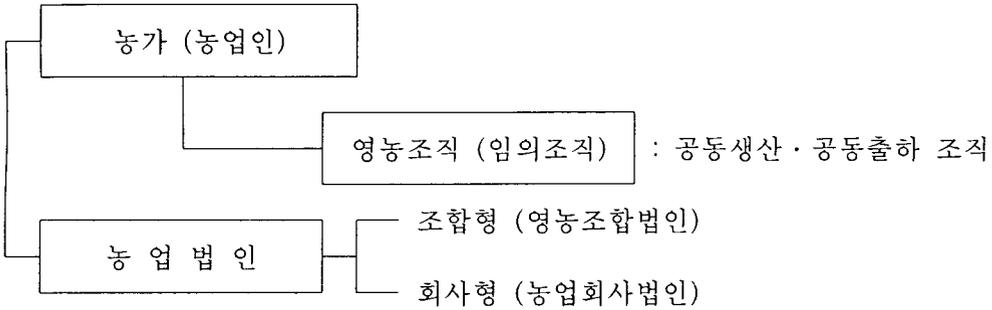
-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의 육성 방침이 정해지고,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동년 11월에 시행령을 공포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육성 목적

- 정부가 농업법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화에 의한 대규모 경영체를 육성하여 자본·기술 집약적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 영농조합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으로 소득 향상
 - 농업회사법인(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작업을 대행

<그림 1> 우리나라 농업경영 주체의 제도적 지위



□ 농업법인제도의 제도적 특징

- 법인 성격 :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체인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다.
- 설립 규정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자단체와 비농업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 주식회사 7인 이상).
 - 비농업인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관의 공증 : 설립 등기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중에

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정관의 공증이 필요 없으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공증이 필요함.

- 사업 범위 : 농업회사법인에게 다소 넓은 영역이 주어지지만, 주식회사에는 농지소유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표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점

구 분	영 농 조 합 법 인	농 업 회 사 법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 법적근거 · 설립자격 · 발기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적 농업경영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 농업인 5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적 농업경영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 합명(무한 2인), 합자(유·무한 각 1인), 유한(유한2~50인), 주식(3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의 출자한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인의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 농지소유 · 타법준용 · 설립운영 · 생산자단체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1표 · 농지소유 가능 ·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 운영 ·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지분에 의함 · 농지소유가능(주식회사는 불가) ·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 좌동 ·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지원 · 국세 · 지방세 · 출자자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 인지세 면제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 ·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 면제, 상속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감면(5년간 50% 감면) · 부가가치세 면제 · 인지세 면제 · 좌동 · 없음
재 정 지 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각종 자율사업 참여	

자료 : 농업·농촌기본법 및 관련법률에 의거 작성.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이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매취·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이 가능함.
- 농지소유 :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농지소유가 허용하고 있음.

○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 1인1표, 농업회사법인 출자지분에 의한다.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이 민법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이 모두 1인 1표씩 동일함.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또한 비농업인의 자본 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가짐.
-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은 구성원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의 권한이 큼.

2.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의 변천과정과 배경

□ 1990년 농발법: 소농 중심의 협업경영 유도

○ 농업법인제도의 성립배경

- 1970년대 이후 농협의 내부조직으로 육성된 농업생산조직인 작목반, 1980년대 농기계의 보급 및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육성되어 온 기계화영농단을 모태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산조직이 형성되고 협업경영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나타났음.
- 대외적으로는 UR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

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력 및 경영체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됨.

-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정부는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경쟁력을 갖춘 소수 정예농가를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한편, 우리나라 농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법인경영체의 육성을 표방하고 1990년에 이를 입법화하면서 농업법인제도가 성립하게 되었음.

○ 제도적 특징

- 영농조합법인은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협업 경영체, 위탁영농회사(농업회사법인)는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성격을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법인으로서 소농이 농업생산단계의 협업을 바탕으로 영농규모화를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농가조건(3년 이상 농업종사자), 규모조건(1ha 미만), 거주조건(법인 소재지의 거주자로 제한), 출자조건(농지출자 의무화)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사업의 내용도 농업 생산에 국한하였음.
- 반면, 위탁영농회사는 당시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농작업 수탁조직을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내용을 위탁영농 및 농작업 대행으로 제한하고, 농지소유를 금지하는 등 농업경영 참여를 배제하였음.

□ 1994년 개정 : 근대적 조직경영체의 확립

○ 제도 개정의 배경

-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규모화·전문화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개별 경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경영체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신농정계획”의 수립에서 비롯되었음.

<표 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과정

	1990	1994	1999
영농 조합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 영농종사자 - 1ha 미만의 농지소유 혹은 일정 규모이하의 가축사육자 - 법인소재지와 동일시·군 또는 인접시·군에 거주하는 자. ○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출자는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에 한함.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업 경영 및 그 부대사업(공동이용시설, 농작업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조합원 자격 요건 삭제. - 비농업인의 준조합원 자격 참여 허용 ○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단독출자 가능 - 조합원의 1인 출자한도 및 준조합원의 총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이내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사업범위에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등 사업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법인 정리를 위한 해산 청구제 도입 ○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 폐지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농업 회사 법인	<p><위탁영농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생산자단체 ○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 금지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영농 및 농작업대행과 그 부대사업(농업경영금지) 	<p><농업회사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인 준 조합원 자격 참여허용 ○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 허가(단, 주식회사는 제외) - 비농업인 출자한도 1/2로 제한(주식회사는 1/3)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사업범위에 농업경영, 농림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사업으로 사업영역 확대 	<p><농업회사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법인의 해산 청구제 도입 ○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 완화(총출자의 1/2) ○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1993년 신농정의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계획”에서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농업생산 만이 아니라 가공, 유통기능 까지를 포함한 생산자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음.
- 위탁영농회사의 경우도 종래의 영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체에서 나아가 쌀농업의 전문경영체로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음.

○ 제도변화의 내용

-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영역을 당초의 농업생산에서 가공·유통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음. 또, 조합원의 개별 영농규모, 거주지 요건, 출자요건을 폐지하여 법인의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비농업인의 자본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음.
- 종래 영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체로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의 성격을 애그리비지니스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기업경영체로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비농업인의 자본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농지소유를 허가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참여도 가능하게 하였음.

□ 1999년 농업기본법 : 부실 법인 정비와 농외자본의 적극 유치

○ 제도 개정의 배경

- 1994년 이후 정부가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수혜 목적으로 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지는 등 법인설립이 과열되고 경영 부실로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정부는 1997년 정책지원사업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등 정책지원요건을 강화하고 경영부실 법인 정비대책을 강구하게 됨.
- 한편으로는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도 참여자의 출자가 부진하여 운영자금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농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참여자의 출자 증액을 유도하고, 농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참여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

○ 제도변화의 내용

- 비농업인의 참여요건 완화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액 규정을 폐지하였음.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일반 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액을 폐지하였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도 비농업인 출자한도액 제한을 완화하였음.
- 부실법인 정비대책의 일환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 법인과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의 경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해산청구제를 도입하였음.

3.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지원정책의 경과

- 1990년 제도발족 시에는 개별농가 수준의 지원과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었음.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농가 수준의 지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과 동일한 농기계구입자금 보조(50%) 지원이 이루어졌다.
- 1994년에는 동년 6월에 수립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토대로 12월에 제정된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자금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로 하여 정책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 1995년부터는 영농규모적정화사업도 가능하게 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구입자금, 유통·가

공자금 등 지원.

- 1996년 1월,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하였다.
 - 시설자금은 기존의 노후·불량시설의 보수와 대체,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시설 설치와 설비 구입, 시설현대화 등에 사용하도록 함. 또한 대출기간은 2~5년으로 차등화하고 이자율은 연리 5%.
 - 운전자금은 생산·가공·유통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그 밖의 법인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일시상환.

- 1997.1월부터 경영 부실 농업법인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기준 강화를 비롯한 법인경영체 운영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책사업대상 자격요건 강화.
 - 출자액 1억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후 1~3년간의 운영실적 평가 등.
 - 사후관리 강화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 별로 실제로 이루어 졌는지 와 조합원 자격유무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 후에도 지원 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 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를 확인 후 정산.
 -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하며 사업실적은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 3일이상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는 우선 선정.

- 금년부터는 농업법인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지

원, 노후 농기계·장비대체 및 신규구입자금지원 강화, 농기업경영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강화, 사업규모확대 및 사업영역의 다각화 및 유망 수출 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등의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법인의 회계·경영·정보처리등 교육 지원(50% 보조)
- 농기계·장비의 구입가격의 융자지원액 상향조정(구입가격의 75% 융자, 연리 4%, 1년 거치 4~7년 균분 상환)
- 농기업경영자금 지원(금리 5%, 운전자금 1년 후 연장가능)
-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법인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사업규모확대 및 사업영역 다각화 지원(시설비의 70% 융자지원, 20억 한도, 연리 5%, 3년 거치 7년 상환)
- 유망 수출법인경영체 수출촉진자금 지원(유망품목 시장개척자금 금리 5%, 1년)

<표 3> 농업법인 정책지원사업의 지원 요건(2000년 현재)

과거(설립요건 기준)	현재(지원요건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5인이상 ○ 1인 출자액 1/3이내 * 영농법인 설립요건만 갖추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가구 이상 ○ 1인 출자액 25% 이내로 한정 ○ 출자금 1억 이상 ○ 정부지원사업이 농업생산인 경우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현물로 출자 ○ 법인경영 평가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설립후 1~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경영평가를 통하여 우수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법인 농기업경영자금 인센티브 부여

□ 성 과

- 농업경영의 전문화·복합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증진
 - 소규모 개별생산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고품질·기술농업의 도입과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일정 기여를 하였음.
 - 생산부문에서는 규모화·시설화, 유통부문에서 대량거래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고품질의 규격화를 통한 시장차별화와 수출기반 조성, 가공부문에서 산지 특산물의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 창출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업경영에 근대적 기업경영방식의 도입
 - 법인화를 통하여 경영이 독립된 인격이 부여되고 가계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수익관계를 명확히 하므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음.
 - 경영내용이 결산서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파악됨으로써 자재구매, 판매, 신용등 거래선에 대한 신용획득의 유리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사회적 신용획득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경영에 회사형태의 근대적 고용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제점

- 유명무실 법인 문제
 - 자율설립주의로 설립 신고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94년부터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의 성격이 부여되고 정책지원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법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 법인설립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검토만으로 신설법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

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다는 보조사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개인사업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유명무실법인을 조장하는 계기가 됨.

- 이에 대응한 대책으로서 1997년부터는 설립기준과 정책지원 자격기준을 구분하여, 설립은 자율적으로 하되 정책지원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만 정책 지원을 하는 등 정책지원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유명무실법인의 사후처리는 미진한 상태임.

○ 법인경영의 부실 문제

- 농업의 수익성 저하, 출자자본의 한계로 사업운영 상태가 부실해지는 사례가 많음.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보조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사례는 예외로 하더라도 출자자본이 미흡한 상태에서 차입자금에 의존하여 대규모 시설유치를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자본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음.
-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판로확보 문제 등 시장여건과 품목별 사업의 경기후퇴등 경영외부조건이 악화되어 부실화되는 사례도 많음.
- 대책으로서 1996년부터 농업경영자금의 도입을 통하여 운영자금의 지원을 확충하고 있으나 경영 컨설팅등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은 부진한 실정임.

○ 농협과의 갈등문제

- 농협의 가공·유통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부정적 인식이 고조되고, 정부에서도 농업인의 요청과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농업법인이 가공·유통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협과 경쟁 관계가 되면서 야기되었음.

- 1994년부터 농업법인의 사업영역을 농산물의 가공·유통부문까지 확대하고 농업법인을 생산자 단체로 규정하는 등 유통시설에 대한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음.
- 다수의 농업법인이 생산물의 판로개선을 위하여 유통·가공사업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기존의 농협사업과 경합관계를 가지게 됨.
- 경합 관계가 극심한 가공·유통법인은 성공적인 법인도 많으나 한편으로는 농협과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의 수요를 무시한 과잉공급으로 시설의 유향화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음.

4. 농업법인의 설립동향¹⁾

□ 설립동향

- 1999년 말 기준 설립된 농업법인의 총수는 7,680개소에 이르고 있음. 법인 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이 5,993개소(78.0%), 농업회사법인이 1,687개소(22.0%)로서 영농조합법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농업법인의 설립·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존치사업체			유고사업체				합계
	운영중	준비중	계	휴업	폐업	소재 불명	계	
영농조합법인	3,849 (64.2)	580 (9.7)	4,429 (73.9)	949 (15.8)	306 (5.1)	309 (5.2)	1,564 (26.1)	5,993 (100.0)
농업회사법인	1,409 (83.5)	45 (2.7)	1,454 (86.2)	134 (7.9)	59 (3.5)	40 (2.4)	233 (13.8)	1,687 (100.0)
합 계	5,258 (67.8)	625 (7.9)	5,883 (75.7)	1,083 (14.1)	365 (4.8)	349 (4.5)	1,797 (23.4)	7,680 (100.0)

1)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0년 농업법인 센서스 조사” 결과치임.

- 설립초기인 '93년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이 많았으나,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조직으로서 자격을 부여하여 유통, 가공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면서 '94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이 법인 설립을 주도하고 있음.
- 휴업·폐업등 사유로 운영을 중단한 사업체를 제외하고 존치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는 5,883개소로 설립된 법인의 76.6%임. 법인유형별로 설립 대비 존치사업체의 비율은 영농조합법인 73.9%, 농업회사법인 86.2%로서 영농조합법인의 부실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사업유형은 농업생산이 37.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대행(25.2%), 유통(18.7%), 기타(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 법인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생산(43.7%), 유통(26.0%), 가공(11.0%)로서 농업생산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영농대행(72.0%), 농업생산(22.1%)의 순으로서 영농대행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은 당초 영농대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고, 정책지원도 농기계구입자금등 영농대행사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대행사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94년 제도개선과 함께 비농업인의 자본 참여를 바탕으로 한 가공, 유통사업의 진출을 유도하였으나 참여가 극히 부진한 실정임.

<표 5> 운영중 사업체의 주사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농업생산	가공사업	유통사업	영농대행	기타	계
영농조합법인	890	224	530	120	273	2,037
	(43.7)	(11.0)	(26.0)	(5.9)	(13.4)	(100.0)
농업회사법인	186	17	8	605	24	840
	(22.1)	(2.0)	(1.0)	(72.0)	(2.9)	(100.0)
계	1,076	241	538	725	297	2,877
	(37.4)	(8.4)	(18.7)	(25.2)	(10.3)	(100.0)

주: '99년말 현재 운영중 사업체 5,258개 중 개별운영 사업체를 제외한 2,877개 사업체의 현황임.

□ 경영개황

- 법인의 평균 출자액은 영농조합법인이 169백만원, 농업회사법인 99백만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액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하여 1.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1인당 출자액면에서는 영농조합법인 6.6백만원, 농업회사법인 16.5백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액이 훨씬 많은 편임.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하여 출자자 수가 많기 때문임.
 - 출자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비하여 현금출자비중이 높은 편임.

- 정책자금이 지원된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2,259개소, 농업회사법인 1,175개소 총 3,434개소로서 99년말 현재 설립된 법인 7,680개소 중 44.7%가 지원되었으며, 총지원액은 115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영농조합법인에 101백억원(87.6%), 농업회사법인에 14백억원(12.4%)이 지원되었다.
 - 1법인당 평균지원액은 평균 336백만원 이며, 법인 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 447백만원, 농업회사법인 122백만원으로서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정책자금이 지원되었음.

<표 6> 법인의 평균 출자액

단위: 천원

구 분	출자금		계 (A+B)	1인당출자액
	현금출자 (A)	현물출자 (B)		
영농조합법인	105,090 (62.1)	64,045 (37.9)	169,135	6,580
농업회사법인	47,749 (48.3)	51,156 (51.7)	98,905	16,483

<표 7> 정책자금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 법인 수(C)	지원액		계(A+B)	1법인 당 평균 지원액[(A+B)/C]
		보조금(A)	융자금(B)		
영농조합법인	2,259	488,980	521,673	1,010,653	447
농업회사법인	1,175	68,997	73,972	142,969	122
계	3,434	557,977	595,645	1,153,622	336

제 3 장

농업법인의 유형별 경영실태와 성과²⁾

1. 정책사업의 수혜실적

□ 지원사업비 규모

- 농림사업 수혜자로서 농업법인의 총사업비 평균액은 1,172백만원으로 보조 388백만원(33.1%), 융자 439백만원(37.5%), 자부담 345백만원(29.4%)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인의 주사업 중심으로 나눈 사업유형별로는 유통사업 형이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생산, 가공, 영농대행 순임.
- 유통사업 형의 총사업비는 평균 2,384백만원으로 보조 944백만원(39.6%), 융자 840백만원(35.2%), 자부담 599백만원(25.1%)으로 보조비율이 가장 높음.
- 농업생산 형의 총사업비는 평균 1,219백만원으로 보조 363백만원(29.8%),

2) 1999년에 실시된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표본조사 자료 가운데 농업법인 조사 자료(421개 법인)를 사업내용별로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치 임.

용자 479백만원(39.3%), 자부담 377백만원(30.9%)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음.

- 유통사업 형이 사업비 규모와 보조비율 면에서 가장 큰 것은 1994년 이후 농업법인을 생산자 조직으로 규정하고 저온저장고, 포장센터, 집하장 등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임

□ 지원자금의 주사용처

- 지원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생산시설(56.2%), 농기계(17.5%), 유통시설(17.3%)의 순으로서 생산관련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나,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사업유형별로는 농업생산형은 생산시설(75.1%), 농기계구입(8.0%), 유통시설(7.7%)의 순으로서 주사업에 대한 투자집중도가 높게 나타 났음.

<표 8> 농업법인 유형별 사업비 규모

단위: 만원

주사업 구분	사업비 내역			
	총사업비	보조금	용자금	자부담
농업생산	121,937 (100.0)	36,320 (29.8)	47,940 (39.3)	37,676 (30.9)
가공사업	53,599 (100.0)	17,410 (32.5)	19,894 (37.1)	16,295 (30.4)
유통사업	238,364 (100.0)	94,405 (39.6)	84,020 (35.2)	59,938 (25.1)
영농대행	14,353 (100.0)	5,150 (35.9)	6,954 (48.4)	2,249 (15.7)
전 체	117,248 (100.0)	38,826 (33.1)	43,934 (37.5)	34,488 (29.4)

<표 9> 지원자금의 주사용처

단위: %

구 분	입식 자금	농지 관련	농기계 구입	기반 시설	생산 시설	유통 시설	가공 시설	기타	합계
농업 생산	3.2	1.0	8.0	1.3	75.1	7.7	2.2	1.6	100.0
가공 사업	-	5.0	5.0	5.0	40.0	10.0	35.0	-	100.0
유통 사업	-	-	3.8	-	22.8	70.9	2.5	-	100.0
영농 대행	-	-	75.7	4.1	16.2	2.7	-	1.4	100.0
전 체	2.1	0.8	17.5	1.6	56.2	17.3	3.3	1.2	100.0

- 가공사업형은 주사업인 가공시설(35.0%)보다는 생산시설(40.0%)에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생산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통사업형과 영농대행형의 경우도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농업생산시설에 각각 총사업비의 22.8%, 16.2%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부담 조달방법

- 농림사업비에 포함되는 자부담의 조달은 자기자본(54.9%)외에 금융기관 대출(41.8)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채비율(0.3%)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비의 평균 70%정도의 보조금 또는 장기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의 상당 부분을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유형별로는 유통사업의 자기자본비율(69.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유통사업의 경우 조합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자본조달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10> 자부담 조달방법

단위: %

구 분	자기자본	금융기관 대출	사 채	자산매각	기 타	합 계
농업생산	52.4	44.1	0.4	1.7	1.3	100.0
가공사업	46.2	46.2	-	-	7.7	100.0
유통사업	69.8	30.2	-	-	-	100.0
영농대행	63.8	32.8	-	-	4.8	100.0
전 체	54.9	41.8	0.3	1.3	1.6	100.0

- 반면, 자부담의 부채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가공사업(53.9%)으로서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높고 참여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부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지원사업 효과

□ 지원자금에 대한 만족도

- 지원자금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 신청시와 비교하여 실제 집행된 자금에 대한 지원규모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 지원자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11.3%, 만족 52.1%, 보통 28.1%, 불만 7.2%, 매우불만 1.4% 등으로 전체 63.4%가 만족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법인 유형별로는 사업비 규모가 큰 유통사업형(69.8%)과 농업생산형(63.3%)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자부담의 부채의존도가 높은 가공사업형은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표 11> 정부 지원자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합계
농업생산	13.1	50.2	28.4	7.0	1.3	100.0
가공사업	0.0	38.5	46.2	7.7	7.7	100.0
유통사업	9.5	60.3	23.8	4.8	1.6	100.0
영농대행	8.6	53.4	27.6	10.3	0.0	100.0
전 체	11.3	52.1	28.1	7.2	1.4	100.0

□ 투자유발

- 정부지원으로 시설을 설치한 후에 추가적으로 유발된 투자액은 당초의 정부지원사업비 대비 생산시설 54.6%, 유통시설 14.0%, 가공시설 11.9%, 농기계 4.2%, 농지구매 11.1% 정도의 투자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주사업 부분에 투자유발효과가 많음. 농업생산 법인과 영농대행 법인은 생산시설에, 가공사업 법인과 유통사업 법인은 유통시설과 가공시설에 투자유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주사업 이외의 투자유발효과는 농업생산형은 가공시설(12.5%)에 주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가공 부문의 참여가 두드러짐.
- 가공사업형은 추가투자액이 가장 많으며, 투자부문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통시설(121.4%), 농지구매(40.2%)의 순으로서 가공된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시설투자로 판단됨.
- 유통사업형은 투자유발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초기에 정책지원사업으로 대부분의 시설투자를 마쳤기 때문으로 판단됨.
- 영농대행은 주사업 부문이라 할 수 있는 농기계(40.1%) 보다 생산시설(40.9%)에 투자가 많으며,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대행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응방안으로 생산·유통사

업으로의 참여가 활발함을 보여 주고 있음.

<표 12> 정부지원후 추가투자액

단위: 만원,(%)

구 분	생산시설	유통시설	가공시설	농기계	농지구매
농업생산	66,179 (78.5)	7,559 (9.0)	10,574 (12.5)	3,055 (3.6)	12,881 (15.3)
가공사업	4,200 (11.3)	45,293 (121.4)	23,567 (63.2)	500 (1.3)	15,000 (40.2)
유통사업	12,882 (7.2)	25,149 (14.1)	10,750 (6.0)	4,400 (2.5)	2,600 (1.5)
영농대행	4,949 (40.9)	4,313 (35.6)	2,120 (17.5)	4,858 (40.1)	- (-)
전 체	45,190 (54.6)	11,558 (14.0)	9,813 (11.9)	3,463 (4.2)	9,218 (11.1)

주: () 안의 수치는 추가투자액/(보조+융자)의 백분율로 당초 지원사업비에 대한 유발투자비율임

□ 자산 변동

- 법인의 설립시와 현재(1998.12.)의 출자금 및 자산액 변동상황을 비교해 보면, 출자금은 설립시 213백만원에서 현재 365백만원으로 0.72배, 토지면적은 76백평에서 107백평으로 0.42배, 고정자산액은 639백만원에서 1.13배, 유동자산액은 959백만원에서 2.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자금의 증가는 자산증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자산의 증가가 주로 부채를 통하여 조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출자금 및 자산변동의 규모변화는 사업의 성장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사업별로는 유통사업형에서 출자금 및 자산의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반면, 수익성이 저하

<표 13> 농업법인의 자산변동 내역

단위: 만원, 평, %

구분	출자금			토지면적			고정자산액			유동자산액		
	설립시	현재	증감	설립시	현재	증감	설립시	현재	증감	설립시	현재	증감
농업 생산	28,140	41,007	45.7	9,946	14,115	41.9	65,839	152,975	132.3	32,694	81,168	148.3
가공 사업	15,048	22,639	50.4	1,423	2,353	65.3	61,560	71,211	15.7	28,171	68,756	144.1
유통 사업	12,715	51,478	304.9	1,635	6,396	291.2	105,841	196,303	85.5	427,339	1,701,016	298.0
영농 대행	3,987	4,648	16.6	5,911	3,596	-39.2	9,661	16,267	68.4	4,015	3,998	-0.4
전체	21,266	36,503	71.6	7,564	10,713	41.6	63,916	136,224	113.1	95,941	347,238	261.9

되고 있는 영농대행사업형의 경우는 출자와 자산 양면에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로 자산증가 내역을 보면, 농업생산형은 고정자산(132.3%)과 유동자산(148.3%)의 증가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가공사업형과 유통사업형은 고정자산(15.7%, 85.5%)보다는 유동자산(144.1%, 298.0%)을 중심으로 자산이 증가되었음.

□ 종합적 효과

- 정부지원 자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증대 효과(62.1%)를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노동력절감(16.4%), 자산증가(13.7%), 기술력 향상(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법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소득증가에 일정 기여를 하고 있으며, 농업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큼.

<표 14> 정부 지원자금의 효과

구 분	단위: %				
	소득증대	노동력 절감	기술력 향상	자산증대	전 체
농업법인	62.1	16.4	7.8	13.7	100.0
농업인	35.2	36.9	11.7	16.2	100.0

3. 경영성과와 요인분석

□ 운영상태

- 운영 상태는 먼저 대분류로 운영중, 준비중, 운영중단, 조사불능 등으로 구분한 후, 운영중에 대해서는 다시 성업, 정상, 미흡 등으로, 준비중에 대해서는 공사중, 미입식, 공사중단 등으로 운영중단에 대해서는 일시중단, 경영포기, 사업전환 등으로 세분하였다.
 - 운영중인 경영체의 세부 판단기준은 성업중: 소득 증대 등 사업성과가 우수, 정상: 정부지원의 시설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 미흡: 투자자가 미흡하여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태를 말함.
- 조사시점(1998.12) 기준으로 조사대상 농업법인의 경영상태는 운영중 94.5%, 준비중 0.3%, 운영중단 5.2%으로 나타났다.
 - 운영중인 법인중에서는 유통사업이 34.8%가 성업중으로 나타나 가장 양호한 반면, 운영중단 법인중에서는 가공사업 법인이 1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영농대행사업형의 경우는 운영중의 비율(98.3%)이 가장 높은 편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영부실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사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사업 운영상황 에서는 성업중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면에서는 타 사업에 비하여 떨어

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

<표 15>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상태

단위: %

구분	운영중				준비중				운영중단				계
	소계	성업중	정상	미흡	소계	공사중	미입식	공사중단	소계	일시중단	경영포기	사업전환	
농업생산	93.4	13.3	53.5	26.6	0.4	0.4	-	-	6.2	3.3	2.1	0.8	100.0
가공사업	86.7	13.3	40.0	33.3	-	-	-	-	13.3	6.7	6.7	-	100.0
유통사업	97.0	34.8	48.5	13.6	-	-	-	-	3.0	3.0	-	-	100.0
영농대행	98.3	6.8	67.8	23.7	-	-	-	-	1.7	0.0	1.7	-	100.0
전체	94.5	16.0	54.3	24.1	0.3	0.3	-	-	5.2	2.9	1.8	0.5	100.0

<표 16>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상황

단위: %

구분	사업미흡사유									운영중단요인					
	시설불량	운영자금부족	수익성저하	사업추진지연	선정작목미흡	인허가문제	재해	기타	계	시설불량	운영자금부족	수익성저하	재해	기타	계
농업생산	1.6	40.6	45.3	1.6	1.6	-	1.6	7.8	100.0	-	35.7	35.7	14.3	14.3	100.0
가공사업	-	60.0	40.0	-	-	-	-	-	100.0	-	50.0	-	-	50.0	100.0
유통사업	11.1	33.3	44.4	0.0	11.1	-	-	-	100.0	-	-	50.0	50.0	-	100.0
영농대행	-	-	83.3	-	-	-	8.3	8.3	100.0	-	-	100.0	-	-	100.0
전체	2.2	35.6	50.0	1.1	1.1	-	2.2	6.7	100.0	-	28.6	38.1	14.3	19.0	100.0

- 운영중인 법인들의 사업이 미흡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수익성 저하(50.0%)로 인한 것이며, 다음으로 운영자금의 부족(35.6%)임. 운영을 중단한 법인들의 가장 큰 이유도 수익성 저하(38.1%)이고, 다음으로 운영자금의 부족(28.6%)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농업생산, 유통사업, 영농대행은 수익성 저하가 사업미흡과 운영중단의 주된 이유이나 가공사업은 운영자금부족이 가장 큰 이유임. 유통사업의 경우는 선정작목미흡(11.1%)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경영성과 달성

- 사업초기 목표와 현재의 성과를 비교하여 달성 정도를 파악한 결과 전체의 64.4%가 보통 수준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는 35.6%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유통사업 법인이(85.7%)가 가장 높은 반면, 가공사업 법인(61.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대행의 경우는 초과달성 또는 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나 사업성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그러나 다른 유형에 비하여 미흡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현상 유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됨.

<표 17>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성과 달성 정도

단위: %

구 분	초과달성	달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농업생산	4.8	21.4	35.8	31.4	6.6	100.0
가공사업	0.0	23.1	15.4	53.8	7.7	100.0
유통사업	6.3	50.8	28.6	12.7	1.6	100.0
영농대행	1.7	13.8	34.5	44.8	5.2	100.0
전 체	4.6	26.1	33.7	30.2	5.4	100.0

□ 정책자금 상환실태

- 조사시점일 현재 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율(기상환액/융자총액)은 3.4%로,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을 포함한 총 융자금에 대한 상환율을 나타내므로 아래의 수치에서 연체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조사시점에서 유형별 기상환율은 영농대행, 가공사업, 농업생산, 유통사업 순으로 총사업비 규모와 융자금규모가 작은 순으로 상환율은 높게 나타남.
- 향후 융자금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전체의 67.4%가 정상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유통사업 법인(83.6%)이 정상상환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환능력 의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영농대행법인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역시 수익성 저하의 문제를 보여 주고 있다. 상환능력 불량에 있어서 가공사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운영자금이 부족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가공사업법인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상환능력 판단기준은 정상: 사업수익만으로 상환 가능, 의문: 추가적인 자금 차입 또는 자산매각이 필요, 불량: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음 등임.

<표 18> 농업법인 유형별 융자금 상환액

단위: 만원, %

구 분	정부융자금	기상환액	잔액	상환율
농업생산	47,940	1,773	46,168	3.7
가공사업	19,894	4,422	15,472	22.2
유통사업	84,020	1,242	82,778	1.5
영농대행	6,954	1,674	5,280	24.1
전 체	43,934	1,478	42,456	3.4

<표 19> 농업법인 유형별 향후 용자금 상환능력

단위: %

구 분	정 상	의 문	불 량	계
농업생산	62.9	35.4	1.7	100.0
가공사업	61.5	23.1	15.4	100.0
유통사업	83.6	16.4	0.0	100.0
영농대행	63.8	36.2	0.0	100.0
전 체	67.4	31.0	1.6	100.0

4. 향후 의향 및 경영애로

□ 향후 영농의향

- 향후 영농의향에 대하여는 사업축소(53.9%) 또는 사업확대(40.9%)로 양극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사업축소 의향이 많다. 이는 동종의 법인간에도 수익을 내는 법인과 그렇지 못한 법인으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법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농업법인 유형별 향후 영농의향

단위: %

구 분	사업확대	현상유지	사업축소	사업변경	영농포기	계
농업생산	40.8	3.1	54.4	0.4	1.3	100.0
가공사업	38.5	23.1	38.5	-	-	100.0
유통사업	41.0	-	59.0	-	-	100.0
영농대행	42.9	4.8	42.9	-	9.5	100.0
전 체	40.9	3.4	53.9	0.3	1.5	100.0

- 유형별로는 유통사업 법인이 사업축소(59.0%)와 사업확대(41.0)간 양극화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부채에 의존하여 초기투자규모가 많았던 법인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의 수익성 악화됨에 따라 사업을 축소하려는 의향이 강함.

□ 경영상 애로점

- 경영상 애로점으로 운영자금부족(34.9%)을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시설 등의 시설투자 후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 그 외에 판매가격(24.7%) 문제와 경영비상승(19.3%) 문제로서 상품의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나, 농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의 문제가 주요 경영상의 애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판매가격 문제는 판로의 확보와도 관련된 문제로 농업법인의 대다수가 유통 부문의 참여를 피하는 주요 배경이라고 판단됨.

<표 21> 농업법인 유형별 영상 애로점

단위: %

구분	판매 가격	경영비 상승	운영자 금부족	노동력 부족	판로 문제	재배기 술부족	시설관리 기술부족	조직원간 갈등	기타	합계
농업 생산	26.6	20.1	34.9	0.4	10.0	3.1	1.7	0.9	2.2	100.0
가공 사업	25.0	8.3	50.0	-	16.7	-	-	-	-	100.0
유통 사업	22.2	13.9	30.6	-	11.1	2.8	16.7	-	2.8	100.0
영농 대행	5.6	27.8	33.3	-	11.1	-	11.1	11.1	-	100.0
전체	24.7	19.3	34.9	0.3	10.5	2.7	4.1	1.4	2.0	100.0

- 유형별로는 가공사업법인은 특히 운영자금면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생산법인은 운영자금외에 판매가격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유통사업법인의 경우는 시설관리 기술에 대한 애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영농대행법인의 경우에는 영농대행 의뢰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경영비에 대한 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영장부 기록

- 농림사업실시요령에서는 3천만원(후계자 및 전업농은 2천만원) 이상의 농림사업을 지원 받은 경영체는 경영장부를 비치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이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영장부 기록상황을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 법인의 46.5%가 간이 기록장 수준으로 39.2%가 부기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는 복식부기를 하는 비율이 가공사업(58.3%), 유통사업(29.4%), 농업생산(23.0%), 영농대행(20.0%) 순으로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큰 사업유형에서 복식부기 기록 정도가 높음.
 - 앞으로 경영실적의 평가를 통한 법인의 사후관리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관리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 경영장부 기록방식

단위: %

구분	간이기록	단식부기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계
농업생산	47.3	16.2	23.0	13.5	100.0
가공사업	25.0	8.3	58.3	8.3	100.0
유통사업	41.2	5.9	29.4	23.5	100.0
영농대행	60.0	10.0	20.0	10.0	100.0
전 체	46.5	14.2	25.0	14.2	100.0

제 4 장

농업법인사례 경영진단 평가

1. 경영진단의 체계

- 사례조사업체는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 중 시·군의 추천을 받은 사업체로 대체로 우수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사례조사 법인수는 총 15개 법인으로서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유의 선정 하였음.
 - 영농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대부분 재무제표가 부실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 재무제표 분석
 - 첫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성장성과 관련한 지표의 전년도 실적,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음식료 중소기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검토하였음.
 - 둘째, 수익성이 높은 경영과 수익성이 낮은 경영과의 비교를 통한 경영성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지표는 수익성은 자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 경상이

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검토하였으며, 활동성의 지표로서는 자본회전율, 안정성의 지표로서는 단기지불능력을 나타내는 당좌비율, 유동비율, 장기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성장성의 지표로서는 순이익, 매출액, 자본의 증감률을 검토하였음.

○ 경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자가진단

- 경영성과와 문제점, 과제를 중심으로 사례 법인 대표자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표 23> 재무제표 분석지표

분석범위	분석내용	분석지표	비 고
수익성	자본 수익성	총자본 경상이익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경상이익/총자본 순이익/자기자본
	매출액 수익성	매출액 총이익율 매출액 경상이익율	총매출이익/매출액 경상이익/매출액
활동성	자본회전	총자본 회전율 자기자본 회전율	매출액/총자본 매출액/자기자본
안정성	단기 지불능력	당좌비율 유동비율	당좌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
	장기 지불능력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 비율	고정자산/자기자본 고정자산/(자기자본+고정부채) 자기자본/ 총자본
성장성	수익의 증감 매출액의 증감 자본의 증감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2. 사례업체의 경영성과

- 1999년말 현재 사례조사업체의 자산(총자본)은 평균 21억으로서 일반적인 농업법인에 비하여 비교적 자산규모가 큰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산의 구성면에서는 고정자산이 70.9%, 유동자산이 29.1%로서 고정자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본의 조달은 자기자본이 33.1%, 부채(타인자본)이 66.9%임. 타인자본의 경우 법인 고정자산의 대부분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보조금 시설은 담보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인의 신용이나 자산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이 대부분임.

- 전년도 대비 자산증가율은 16.9%, 자산형태별로는 유동자산 66.3%, 고정자산 4.2%로서 주로 유동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본조달측면에서는 부채증가율이 15.5%, 자기자본증가율이 16.5%로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음식료업 중소기업의 6.9%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자산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농업법인의 사업확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 음식료업은 고정자산증가율이 높은 반면, 사례법인은 유동자산의 증가율이 높음. 농업법인은 설립초기에 정책자금으로 고정자산의 확보가 이루어 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자본의 조달면에서는 음식료업은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자기자본을 증액하여 부채를 대폭 축소시킨 반면, 사례법인은 자기자본, 부채 양면에서 확대되고 있음.

-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경영진단 결과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액총이익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자본이익율과 매출경상이익율면에서 수익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주된 요인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증가, 금융비용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음식료업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보면, 매출이익율 면에서는 농업법인이 우세한 반면, 자본이익율 면에서는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업법인이 매출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투하액이 많고 자본회전이 느리기 때문으로 판단됨.

○ 안정성 면에서는 장·단기적인 지불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단기적인 지불능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당좌비율 및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의 구성이 현금·예금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보다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재고자산등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에 의존하고 있어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고정비율은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 음식료 중소기업에 비하여는 높은 수준으로 자본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있음.

<표 24> 사례법인의 자산 및 자본의 구성

단위: 천원, %

		자산			자본 및 부채		
		유동자산	고정자산	계	부채	자본	계
사 례 법 인	1998(A)	373,496 (20.5)	1,447,198 (79.5)	1,822,694 (100.0)	1,234,316 (67.7)	588,378 (32.3)	1,822,694 (100.0)
	1999(B)	621,285 (29.1)	1,508,528 (70.9)	2,131,338 (100.0)	1,425,720 (66.9)	685,490 (33.1)	2,131,338 (100.0)
	증감률 (B-A)/A	66.3	4.2	16.9	15.5	16.5	16.9
음식료 중소기업 증감율		6.3	13.1	6.9	-25.5	32.2	6.9

- 자기자본 비율은 음식료중소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시설자금의 보조금 지분(40%내외)을 포함한 수치로서 순수 자부담만을 계상할 경우 크게 낮아짐.
- 성장성 면에서는 매출액은 전년대비 36.4%의 증가되었으나 수익성 면에서는 -18.2%로 감소되어 사업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하락 및 일반관리비용 및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임.

<표 25> 사례조사업체의 경영진단지표

단위: %

구 분		음식료 중소기업 (1999)	사례법인 평균	
			1998	1999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율	6.9	5.5	3.7
	자기자본이익율	16.3	24.2	15.1
	매출액 총이익률	20.7	33.4	32.0
	총매출경상이익율	3.6	16.0	7.6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1.4	1.3회	1.2
	자기자본회전율	6.1	6.1	5.0
안정성	당좌비율	66.3	172.0	220.8
	유동비율	94.0	207.5	323.5
	고정비율	212.4	387.9	333.9
	고정장기적합율	106.3	135.7	105.1
	자기자본비율	24.2	35.3	35.4
성장성	순이익증가율	-	-	-18.2
	매출액증가율	2.8	-	36.4
	총자본증가율	6.9	-	16.9
	자기자본증가율	32.2	-	16.5

- 금융비용의 경우, 부채규모가 확대되고, 정책자금의 경우 정책사업의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으로 이자지급만 했으나 차츰 원리금상환시기에 도달한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3. 경영 성과의 요인

□ 경영 성공요인과 사례

- 자본수익율이 높은 경영의 특징은 고정자산의 취득을 자기자본과 고정부채의 범위에서 최소화 한 경영, 매출증대보다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비용지출을 최소화한 경영으로 나타났다.
- A 영농조합(채소 생산·유통)
 - 조합원 6명이 1인당 18백만원 총 출자금 108백만원을 균등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임. 조합원은 전원 채소 작목반 출신으로 기술능력과 독자적인 판매력을 갖춘 전업농임. 1996년 정부의 “중소농 고품질사업”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사업비 245백만원의 자부담 40%는 조합원의 자산 담보대출로 조달하였음.
 - 사업내용은 유통사업으로서 조합원 개별농가의 생산물 뿐만아니라 관내 작목반의 생산물을 수탁 받아 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판매처의 요구에 따라 관내 부족물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타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거래를 하는 등 채소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법인경영성과는 매출액이 전년도에 줄어들었음에도 사례 업체 가운데 자본수익률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임. 고정시설투자의 적정화, 고정거래처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판매관리비등 운전자금 및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매년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여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정책자금외의 단기차입금이 없는 무차입 경영을 실현하고 있음.

○ B 영농조합(버섯 생산)

- 조합원 8명이 200백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임. 조합원은 버섯 작목반 출신으로 느타리버섯에서 소득, 노동력 이용 면에서 유리한 팽이버섯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례임. 법인 설립전 2년 동안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통하여 재배기술능력 확보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한 후 1995년 정부의 “특작 생산유통사업”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음. 사업비는 518백만원으로 자부담 40%는 조합원의 자산 담보대출로 조달하였음.
- 경영성과는 매출액 이익률이 가장 높은 경영으로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동종 업계 타 업체에 비하여 높은 생산성으로 2억원 이상의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의 적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자본 축적을 함으로써 사례업체 가운데 자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경영임.

○ C 영농조합(감자 생산·유통)

- 1991년 법인제도의 도입 초기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1999년말 현재 조합원 86명 준조합원 95명에 총 출자금 202백만원 임. 조합원은 전원 감자 작목반 출신으로 사업초기에는 농작업 위탁영농과 농자재공동사업으로 출발했으나 1992년 감자 가공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감자 계약재배를 하면서 유통사업에 참여하여 현재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관내 12개 작목반 335천평의 재배면적에서 계약생산 및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지의 이점을 활용하여 산지시장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래교섭력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법인경영성과는 회원농가에 대한 꾸준한 기술지도와 종자보급을 통하여 계약재배 참여농가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부대시설인 농산물 집하장(100평), 저온저장고(30평), 농기계보관창고(60평)등에서 비료, 계분 농약등 구매사업은 물론 감자·양파 저장등 다양한 사

업을 유치하여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경영의 다각화에 성공한 법인으로서 설립이후 매년 흑자경영을 실현하고 있음.

<표 26> 자본수익율 상위20% 법인의 자산·자본의 구성(1999)

단위: 천원, %

구 분		사례법인 평균	A 사 (채소 생산·유통)	B 사 (버섯 생산)	C 사 (채소 유통)
자산	유동자산	621,285 (29.1)	54,690 (16.0)	618,495 (24.5)	479,167 (43.5)
	고정자산	1,508,528 (70.9)	285,830 (84.0)	1,905,173 (75.5)	662,010 (56.5)
	계	2,131,338 (100.0)	341,521 (100.0)	2,523,668 (100.0)	1,101,932 (100.0)
자본 및 부채	자본	685,490 (33.1)	243,521 (71.3)	1,052,231 (41.7)	732,878 (66.5)
	부채	1,425,720 (66.9)	98,000 (28.7)	1,471,437 (58.3)	369,054 (33.5)

-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실시, 이용고 배당도 실시하는 등 품목 협동조합으로서의 내실을 갖추고 있음. 수익성, 안정성등 경영성과 지표면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하여 참여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경영 부진요인과 사례

- 자본수익율이 낮은 경영의 특징은 판로의 불안정으로 투하 자본에 비하여 매출실적 저조한 경영, 고정자산의 취득을 주로 타인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체로서 감가상각비등 고정비용과 금융비용이 많은 경영임.

<표 27> 자본수익율 상위20% 법인의 경영분석 지표(1999)

단위: %

구 분		사례법인 평균	A사 (채소 생산·유통)	B사 (버섯생산)	C사 (채소유통)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율	3.7	15.7	8.9	5.3
	자기자본이익율	15.1	22.0	27.2	8.0
	총매출이익률	32.0	16.6	37.7	10.5
	총매출경상이익율	7.6	4.0	17.3	2.7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1.2	3.9	0.5	2.0
	자기자본회전율	5.0	5.5	1.9	2.9
안정성	당좌비율	220.8	-	32.2	472.7
	유동비율	323.5	-	44.2	570.0
	고정비율	333.9	117.8	230.5	183.9
	고정장기적합율	105.1	84.0	169.6	61.2
	자기자본비율	35.4	71.3	32.8	55.5
성장성	순이익증가율	-18.2	-42.1	8.1	18.1
	매출액증가율	36.4	-6.9	16.2	55.7
	총자본증가율	16.9	10.5	4.1	-1.62
	자기자본증가율	16.5	28.2	42.6	-9.6

○ D회사법인(채소 육묘생산)

- 1991년 고랭지 채소농가로 구성된 발기인 8명이 총 출자금 210백만원을 출자하여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영농 사업을 개시하였음. 그러나 위탁영농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1993년에는 총사업비 840백만원으로 육묘시설을 도입하여 채소 육묘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현재 4,200평의 온실에서 채소 육묘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 법인은 전문 기술인력의 유치하여 초기 육묘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독자적인 육묘기술을 확보하여 1998년에는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을 하

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매출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판매처 개발이 미흡하여 투하자본에 비하여 매출실적이 부진하고, 판매관리비, 원재료비의 상승 등으로 적자경영을 나타내고 있음.

- 이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협과의 판매원계약을 통하여 미수금관리문제를 해소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농외자본의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98년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E사 (버섯 생산)

- 1994년 버섯재배농가 28명이 총 출자금 942백만원을 출자하여 느타리버섯 배지사업을 개시하였음. 조합원이 버섯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면에서는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1998년 느타리버섯의 판매가의 하락, 외상판매액의 미수금 증대(불량미수금 1억400만원)로 경영이 적자로 전환되자 부가가치가 높은 송이버섯 생산으로 품목을 변경하고 주문생산으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판로 개발이 미흡하여 매출이 부진하고, 부채의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경영이 불안정함. 단기차입금의 경우 금리가 높아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 F사 (채소 유통 가공)

- 1994년 양파주산단지 양파재배농가 40명이 총출자금 300백만원을 출자하여 유통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1998년 식품개발연구원의 음료제조 기술을 이전 받아 음료가공공장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가공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
- 우수상품 개발로 각종 포상을 받은 바 있으며,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을 마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서는 등 독창적인 상품개발을 통하여 우수법인으로 선정된 회사임.
- 이 조합은 매출액 증가에 힘입어 1998년 적자경영에서 1999년에는 흑자

<표 28> 자본수익율 상위20% 법인의 자산·자본의 구성(1999)

단위: 천원, %

구 분		사례법인 평균	D사 (채소 육묘생산)	E사 (버섯 생산)	F사 (채소 가공)
자산	유동자산	621,285 (29.1)	240,348 (17.1)	390,128 (10.3)	697,121 (19.3)
	고정자산	1,508,528 (70.9)	1,141,644 (82.9)	3,392,889 (89.7)	2,921,514 (80.7)
	계	2,131,338 (100.0)	1,403,818 (100.0)	3,783,016 (100.0)	3,616,635 (100.0)
자본 및 부채	자본	685,490 (33.1)	482,508 (34.3)	1,999,468 (52.9)	312,515 (8.6)
	부채	1,425,720 (66.9)	877,167 (65.7)	1,783,548 (47.1)	3,306,124 (81.4)

<표 29> 자본수익율 하위20% 법인의 경영분석 지표(1999)

단위: %

구 분		사례법인 평균	D사 (채소생산·유통)	E사 (버섯 생산)	F사 (채소 가공)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율	3.7	-4.8	1.1	0.6
	자기자본이익율	15.1	-15.0	2.1	6.5
	총매출이익률	32.0	98.6	34.0	31.5
	총매출경상이익율	7.6	-9.7	7.1	2.4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1.2	0.5	0.2	0.3
	자기자본회전율	5.0	1.5	0.3	2.9
안정성	당좌비율	220.8	119.8	20.9	43.3
	유동비율	323.5	137.9	23.1	62.8
	고정비율	333.9	236.6	169.7	934.9
	고정장기적합율	105.1	92.9	162.0	116.5
	자기자본비율	35.4	34.4	52.9	8.6
성장성	순이익증가율	-18.2	-7.1	61.4	3,672.0
	매출액증가율	36.4	61.5	-27.8	130.1
	총자본증가율	16.9	-0.8	1.4	-0.82
	자기자본증가율	16.5	-10.9	2.2	-64.9

경영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동안의 적자경영으로 자본이 잠식되고 조합원의 자본참여가 원활하지 못함. 차입금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금융비용이 과다하고, 운전자금 부족으로 단기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출 경상이익율, 자본이익율등 수익성과 안정성이 사례업체의 평균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음.

- 농가 조합원의 자본참여가 어렵고, 조합원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조합경영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회사형으로 법인형태의 전환을 피하고 있음.

4. 유형별 사업동향과 경영성과의 자가진단

□ 전체동향

- 법인화의 성과와 문제점 양면에서 자금조달을 최우선으로 들고 있음.
 - 성과측면에서는 정책자금의 수혜, 문제점에서는 시설의 운영자금문제를 들고 있음.
- 경영의 성과로서는 판로개선, 규모화, 기술개발을 주요한 성과를 들고 있음.
 -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비용절감 측면보다는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개선을 통한 소득·수익의 증대에 초점을 둔 경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따라서 생산형의 경우도 독자적으로 판로 개척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형에서 유통, 가공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음.
-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운용상의 문제 외에 경영관리, 판로확보면에서 경영애로가 있음.
 - 운영자금
 - 회계관리 및 경영컨설팅

- 판로의 확보, 외상매출의 증대와 미수금 관리상의 문제

- 경영애로의 대응방향으로는 전 분야에서 농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가 많음.
 - 특히, 농협의 융자금 출자전환, 금리 인하, 상환기간의 연장등 금융지원 측면과 농협의 전국적인 유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청이 많음.
 - 자금문제의 경우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경영을 회사경영형태로 개편하여 외부 출자자를 모집할 의향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해산절차가 필요하고 정부보조금의 상환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는 농업법인의 농협 정조합원 참여, 법인 대표의 당연직 이사 배정등을 요구하고 있음.

□ 생산형

- 사업동향
 - 생산형 법인은 노동력 및 기계·시설의 공동이용형과 영농의 규모화 또는 시설형 농업의 참여를 목적으로 한 협업형으로 구분됨.
 - 공동이용형은 농가간의 재배방식등 기술격차, 포장의 분산 등으로 협업의 유리성이 없는 축산, 채소·과수부문에서 활발하며, 생산단계의 협업보다는 집하장, 저온저장고등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유통형 법인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음.
 - 협업형은 규모의 경제성이 큰 수도작, 공장형 시설재배가 이루어지는 버섯, 채소 육묘부문에서 활발함. 수도작의 경우 위탁영농사업형에서 임차지를 확보하여 생산형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음.

○ 경영성과, 문제점, 대응방향

- 법인화의 목적은 공동이용형은 법인경영을 통한 자본이익의 확보보다는 개별 농가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음. 협업형의 경우는 시설화·규모화 측면을 들고 있음.
- 법인화의 문제점으로서는 대부분 조합원 수가 작은 소규모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본이 영세하고, 경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임. 공동이용형의 경우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뭄.
- 경영성과면에서는 규모확대와 함께 기술개발, 경영애로면에서는 자금조달 및 판로확보를 들고 있음. 경영애로의 대응방향은 출자증액을 하거나, 중간상인등을 경영에 참여케 하여 비농업자본의 유치를 꾀하고 있음.
- 농협과의 관계면에서는 지역농협과 사업이 경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농협의 판매기능에 대한 불만이 많음. 이러한 문제로 생산형 법인의 다수가 판매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가 많음. 회계관리, 판매면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고 있음.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물을 판매하는 일부 법인에서는 생산물의 판매영업은 법인이 담당하되 대금의 정산은 농협이 대행하는 형태로 제휴를 하는 사례도 있음.

□ 유통형

○ 사업동향

- 유통형.법인은 작목반 출신 소수 전업농이 당초 생산형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가 판매·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유형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다수 농가가 품목별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유형으로 구분됨.
- 소수농가 중심의 유통형은 작목반 가운데 생산기술이 뛰어난 소수농가를 중심으로 판로개선을 목적으로 저온저장고, 직매장등 유통시설을 공

동이용 하거나 유통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

- 주산지 조합형은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현재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판매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경영성과, 문제점, 대응방향

- 유통형 법인의 법인화의 성과는 유통·판매에 전문성을 갖추고 판로개선을 통한 개별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신용을 얻고 있다는 점을 법인화의 성과로 들고 있으며, 법인화의 문제점으로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 출자 조합원과 자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진간의 갈등이 많은 점임.
- 이에 따라 소수 고액 출자자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법인 형태로 전환을 꾀하거나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액 이상의 출자를 의무화하여 소액 출자자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음.
- 경영성과로서는 판매사업의 규모화를 통하여 독자적인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판로개선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경영의 애로사항으로는 판매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통시설의 확충, 자본조달 문제를 들고 있음.
- 농협과의 관계면에서는 조합형의 경우 농협과 사업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분적으로 농협의 구·판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농협과의 역할 분담과 제휴를 통하여 농협 유통망의 활용과 자본의 유치를 바라고 있음.

□ 가공형

○ 사업동향

- 가공형은 당초 유통사업에 참여하다가 잉여 농산물의 처리 또는 부가가치의 증대를 목적으로 가공사업 참여한 경우가 많으며, 품목별 주산단지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음. 쌀의 경우 위탁영농회사가 생산한 쌀 판

매를 위하여 가공사업을 도입한 경우가 많음.

- 조직형태는 조합형과 회사형으로 구분되는데, 조합형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사업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형은 소수 자본가를 중심으로 운영됨.

○ 경영성과, 문제점, 대응방향

- 가공형 법인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법인화의 성과로서 자본형성을 들고 있으며, 지역농업에 바탕을 둔 산업체로서 사회적 신용획득 면에서도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음. 문제점으로는 원재료 구입등 운영자금의 소요가 많으나 농업자본으로는 자본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이에 따라 당초 조합형으로 설립된 법인의 일부는 자본유치를 위하여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회사형으로 전환한 사례도 많음.
- 경영성과로서는 사업의 규모화와 함께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경영성과로 들고 있으며, 경영애로면 에서는 운영자금 문제와 함께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자금관리, 판매관리등 경영관리면의 전문성 확보 문제가 주요 과제임. 조합형 경영에서는 전문경영인의 유치, 경영 컨설팅에 대한 관심이 큼.
- 농협등 지역과의 관계 면에서는 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의 홍보차원에서 상품 홍보 및 판매 지원과 자본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 특히 전국적인 농협 유통시설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지역농협과의 갈등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표 30> 법인 유형별 경영성과, 문제점, 대응방향

	생산형	유통형	가공형
법인화의 성과	소득, 규모화	소득, 사회적신용	자금, 사회적신용
법인화문제점	자금, 경영관리	자금, 조합원이해	자금조달
경영성과	규모, 기술개발	판로개선, 규모화	규모화, 판매개선
경영애로	자금, 판로확보	자금, 판로개선	자금, 경영관리
경영애로의 대응방향	자본유치, 농협과의 협력	시설확충, 출자증액	자본유치, 컨설팅
참여 농협사업	구·판매사업	구·판매	구·판매
농협 지원희망	경영관리, 판매	자본, 시설이용	자본, 판매

제 5 장

농업법인 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1.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 경영 기반의 강화

- 첫째, 농업법인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을 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개발, 품질향상, 비용 절감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이 필수적이다.
- 둘째, 생산 작목의 복합화, 유통·가공등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기업적 경영체질 강화

- 첫째, 정상적인 회계관리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 마인

드를 강화하여야 한다.

- 둘째, 자금, 경영자능력, 전문 기술인력의 자유로운 도입이 가능한 기업적 경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 셋째, 마케팅 중심의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소비자정보·판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서비스 사업체, 농협등 다양한 경영간의 제휴가 요구된다.

□ 지역농업의 중심세력으로 발전 유도

- 농업법인의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애그리비지니스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도 농업인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어 향후 지역농업의 중추세력으로서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지역농업 후계자의 육성 차원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2) 사업유형별 발전방향

□ 영농대행형

- 영농대행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영농대행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다수의 경영이 개별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 사업체로서 존속을 위해서는 연간조업체계의 확보가 선결과제로서 지역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 법인경영의 내실을 유지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영농대행+임차경영의 생산형으로 전환되거나 가공사업을 도입하여 가공형으로 전환하고 영농대행사업은 부대사업으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영농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작업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

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 독일의 머쉬넨링의 경우 위탁작업의 수요자를 기계보유자에게 연결시켜 주는 알선사업을 통하여 농기계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농기계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 주체가 되어 농기계의 소유자와 위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연결해 주는 한편, 농기계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지도를 함으로써 지역의 적정 농기계 보유·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생산형

- 생산형 법인은 쌀의 경우는 위탁영농회사가 임차지를 경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채소의 육묘생산, 특작의 버섯생산, 축산의 계열화 사업등 토지 이용정보다는 시설형 농업에서 활발하다.
- 그 외의 품목에서는 주로 생산시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유통·판매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례도 많음.
- 법인의 구성원은 농협의 작목반 가운데 기술 및 규모가 큰 전업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의 차별화와 상품의 규격화를 통하여 시장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그러나 법인의 상당수가 정책지원사업으로 유치한 생산·유통시설이 농가의 생산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시설의 가동률이 낮고, 정부가 규격시설의 공급차원에서 법인의 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투자로 사업부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 법인의 경영여건에 맞는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대규모 투자가 유

발되는 시설은 지역 단위로 유치하여 관내 법인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러한 법인들은 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인이 많고, 농협과 사업의 경합관계가 없는 만큼 법인경영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목반과 같은 차원에서 농협이 경영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농협의 내부조직인 작목반과 같은 차원에서 회계처리, 경영관리지도, 판매원 계약등 법인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보가 요구된다.

□ 유통형

- 농협의 판매사업의 부진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산단지 중심으로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식 유통형 조합과 직매장 등을 통하여 소수농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구분된다.
- 대규모 산지 유통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법인은 농협의 품목별 조합으로 발전시키되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 또, 소비지의 물류센터나 대형 할인 도소매업체등과 직거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산지의 거점 유통기관으로 발전을 유도하여야 하며, 계약생산 등을 통한 생산자 계열화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직매장 형태의 소규모 유통형의 경우 조합구성원의 개별 생산물의 일부분만을 직매장을 통하여 출하할 뿐 시장거래 또는 농·축협의 계통출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생산형 마찬가지로 지역농협과의 제휴와 협력이 필요하다.

□ 가공형

-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의 획득을 위하여 생산물의 가공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산지의 농산물 수급조절기능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판로확보면, 원료농산물의 확보면에서 경영애로가 많은 만큼 지역농업 발전의 차원에서 농협,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가공원료 구매시 농협이 수매를 대행하거나 농가와의 계약재배 주선, 원료구입자금의 대출, 농협계통판매, 판매원 계약을 통한 판매대행등 구·판매면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로서 개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출자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농업법인제도 · 정책적 과제와 개선방안

□ 법인설립의 정상화 추진

<과 제>

- 1994년 이후 농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법인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의존하여 대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법인설립이 과열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 이러한 정책자금 수혜를 목적으로 설립신고만 해놓고 사실상 운영되

지 않고 있는 휴면법인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정책적인 우대조치가 많은 영농조합법인에서 많다.

- 한편으로는 사실상 농가간의 협업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작의 영농대행형 생산조직이 농기계 정책의 왜곡으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반면, 회사법인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책 수혜의 이점을 고려하여 영농조합으로 설립되는 등 사업의 성격보다는 정책 지원측면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일부에서는 사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회사법인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 정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법인의 정책지원기준을 강화하고 1999년에는 부실법인 및 유명무실법인을 정비하기 위한 법인해산청구제를 도입하였으나 기 부실화된 법인의 정비는 부진한 실정이며, 조직형태의 변경과 관련한 대책은 설립단계에서 요건구비만 확인할 뿐, 특별한 대책수립은 없다.

<개선방안>

- 유명무실 법인의 정비
 - 설립만 하고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법인은 설립후 일정 기간이 초과 되었을 경우는 법인해산청구제를 적용하여 해산조치가 필요함.
 - 그러나 운영부실로 법인해산청구제를 적용할 경우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자산의 잠식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출자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청산이 어려우며, 청산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 개별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법인자산의 대부분이 법인

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농가의 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담보지분에 의거 사실상 개별적으로 소유·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경영으로 전환된 법인이라도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개별 경영이 승계하는 방법으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함.

- 가족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경우는 가족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의 한 형태로 적법화 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가족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는 법인화를 통한 경영마인드의 제고와 근대적 경영기법 도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용확보, 상속시 자산의 분할방지가 주 목적임.

○ 법인의 설립동기 및 목적에 맞는 조직 변경 추진

-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농업의 영농대행형 및 생산형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수익측면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농가간의 협업조직의 성격이 강하므로 영농조합법인으로 조직변경을 추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차원에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사실상 회사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은 조직형태를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토록 조치하고, 조직변경을 위하여 조합을 청산하는 경우 종전자산 및 세제혜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평가와 지분의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의 감면조치가 필요함.
 - 현행 법령에서의 조세감면내용은 회사법인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통합시 통합법인에 대하여 통합전 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동 법률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농지소득) 및 감면(농지소득외)혜택, 현물출자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승계 받을 수 있음.

□ 자본축적의 활성화 추진

<과 제>

- 법인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본출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형식상의 출자만 하고, 운영자금은 물론 시설자금 지원액의 자부담 부분도 차입금에 의존하여 조달하고 있어 경영애로가 많다.
- 차입방법도 법인자체의 자산이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종사자의 개별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있어 법인의 자본조달은 물론 신용획득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자본출자이 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자본이 영세하고, 자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법인 종사자의 참여목적이 법인사업의 수익보다는 개별 경영의 비용절감 또는 소득증대 방편으로 참여하고 있어 출자증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 정부는 대책으로서 제도적으로 비농업인의 자본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참여 문호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자본수익성이 낮고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며, 의사결정과정에도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을 유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관리 차원에서 회원제 형식의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조합원의 출자증액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나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

○ 자기자본의 충실화

- 출자증액에 따른 등기 비용문제 해소, 세제상의 혜택, 정책지원의 우대 조치등 유인책과 함께 법인설립시 법인 및 구성원의 최저 자본한도액을 설정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1991년 제도 도입. 법인 출자최저한도액은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 1인당 한도액은 5만엔임. 미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조치.
- 현행 정책자금 지원자격 기준으로 설정된 출자액 1억원 이상의 정액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 자본규모가 다양하므로 사업비중 자부담분의 일정 비율이상을 출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출자증액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예: 사업비 자부담 부분의 50% 이상을 출자증액을 통하여 조달하도록 의무화)

○ 타인자본의 유치 활성화

-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법인의 경우 회사형태로 전환하여 타인자본의 유입을 도모하고, 조합형의 경우 시·군, 농협등 지역 으로부터의 자본출자·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군별로 지역특산품 개발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발전모델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이 출자·육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법인의 출자지원에 필요한 교부금을 지원하는 가칭 “법인출자육성 교부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제3섹타 농업공사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 농협과 민간자본으로부터의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자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출자 배당액을 최저 약정

이자액 수준으로 보장하는 “우선출자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 보조금 지원시설의 경우 담보설정을 가능토록 하여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 수익성의 제고

<과 제>

- 신설법인에 대하여 시설현대화란 명목하에 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시설을 유치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부채를 유발하고 자본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다.
- 농업은 매년 품목별 사업의 경기변동이 심한 만큼, 이에 대비한 충분한 자본적립이 필요하나 법인종사자는 법인경영의 발전보다는 개별이익을 추구하여 수익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황기에 과도한 차입경영을 유발하는 측면이 많다.
- 법인경영은 가족경영과 달리 경영관리 측면에서 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요구되나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개선방안>

- 경영자 스스로의 자구노력 유도
 - 초기 법인의 경우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의 유치보다는 이익잉여금의 적립 유도, 참여보수 제한등의 경영내부의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를 실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우대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농협의 경우 당해 연도 순수익의 5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총수익에서 법정적립금으로 10%, 사업준비금으로 20%,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20%를 각각 의무적으로 적립)

○ 영세법인의 과도한 시설 투자 억제

- 설립된 법인의 다수가 매출이익은 실현하고 있으나 자본이익은 부진한 실정으로 이는 과도한 시설투자로 과도한 자본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시설의 외부화를 통하여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경영이 필요함.
- 집하장, 저온저장고등 유통시설의 경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대단위 시설의 경우는 시·군, 농협등 공적기관은 소유주체, 영세법인등 수요자가 이용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
-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규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법인의 경영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시설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법인의 사업여건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설규격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농림사업시행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시설규격 완화)
- 운영자금의 경우 가공사업에서 원료 농산물의 조달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원료조달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함

○ 기술개발 및 축적

-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술개발과 함께 고품질 생산을 통한 특정 수요층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도 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기업체의 세제상의 지원조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10조)등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 경영관리능력의 제고

- 농업법인의 상당수가 경영관리의 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영부실의 방지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사업체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적절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함.
-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농업경영 컨설팅 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정책자금 수혜 법인에 대하여는 의무화 조치가 필요함.
 - 일본의 경우 '99년에 정부의 농업법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업법인협회, 농업회의소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1년부터 정부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여 농협으로하여금 개별 경영체와 법인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후관리차원에서 농협이 주체가되고, 시·군 농업기술센타의 품목별 전문가, 회계사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농협과의 관계정립

<과 제>

- 농업법인은 지역농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법인의 발전은 물론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농업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농협과의 협력과 제휴가 중요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경합 관계가 형성되면서 상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구체적 사례로는 농업법인의 상품이 전국적인 농협의 유통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부 농협유통시설을 이용하는 법인도 있으나 회원농협에 비하여 이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한편으로는 동일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업면에서 직접적인 경합이 발생하여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다.

- 정부의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으로 농협이 정책자금의 실질적인 집행 및 관리기관으로 역할이 부여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법인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집행기관을 농협외의 다른 신용기관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중소기업의 경우는 정책자금지원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외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등으로 분산 집행되고 있음.
- 이러한 경쟁관계는 상호 경영발전을 위한 자극제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시설투자의 경우 지역 내의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중복투자를 유발하고 출혈경쟁으로 서로 경영상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어 상호 제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개선방안>

- 농업법인과 농협의 협력체계 구축
 - 현재, 통합농협법 상에는 영농조합법인이 농협의 정조합원으로 참여가 가능함. 그러나 정조합원으로 참여하더라도 협동조합의 1인1표주의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은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뭄. 기본적으로 농협과 법인의 상호출자를 통하여 농협과 농업법인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 법인이 농협 경제사업에 일정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품목별 농업법인과 농협과의 전략적 제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농협과 경합하는 대규모 유통법인은 농협이 자본출자를 통하여 법인경영에 참여하거나 품목조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역농

협에서 기존의 대규모 유통법인과 경합하는 사업의 신규참여는 지양하도록 하는 지도도 요구됨.

○ 농협의 농업법인 사후관리 주체로서의 역할 제고

- 지역농협과 농업법인과 제휴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법인 육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협이 농업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용평가에서 나아가 경영컨설팅을 포괄하는 경영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책자금 집행 및 법인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역할 수행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과 농협이 사업 면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만큼 신용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이 분리되어야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임. 신·경분리가 되지않을 경우는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는 지역 단위농협보다는 농협중앙회가 직접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 고 문 헌

- 김정호 외,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 박문호, 『농업회사법인의 존립조건과 정책과제』, 농업정책학회발표논문, 1995.
- 농촌진흥청, 『농업법인경영체 운영사례』, 농업경영상담자료 제 34호, 1997.
- 한국영농법인중앙회, 『영농법인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1997.
- 농정연구포럼,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과제』, 제46회 세미나 결과보고, 1997
- 유병규, 『지역 영농조합법인의 경영활성화 방안연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7.
- 김준오, 『영농조합법인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6.
- 정기식외,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농협중앙회, 1997
- 이건열외, 『특품육성을 위한 생산자조직의 활성화 방안』, 전남발전연구원, 1994
- 伊藤忠雄, 『現代農業生産組織の經營論』, 農林統計協會, 1991.
- 酒井富夫, “農業法人制度の課題”, 『日本の農業』 第181號, 農政調査委員會, 1992
- 掘越孝良, “農業法人經營發展の條件”, 『日本の農業』, 農政調査委員會, 1995.
- 朴文浩, 『韓國における農業法人經營の實態と課題』, 日本農業經濟學會, 1998
- 永田惠十郎 外, 『土地利用型農業の再構築と農協』, 農文協, 1995.
- 黑河 功, 『地域農業再編下における支援システムのあり方』, 農林統計協會, 1996
- 總務廳行政監察局, 『農業擔い手對策の現状と課題』, 大藏省印刷局, 1996

<부 록 1>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사례

1. 생산형

□ 사례업체의 경영개황

	한국버섯조합	용해농산	대관령 영농조합	파평영농조합	천하영농조합	
법인형태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주사업	버섯 생산	버섯생산	채소육묘생산	버섯생산	돼지생산 계열화	
조합원수	28명	9명	8명	8명	11명	
출자액	9.4억원	0.5억	2.1억	0.8억	16.2억	
자기자본액	9.4억원	1억	2.1억	2.0억	21.4억	
정부 지원 사업	시설	생산시설	생산시설	온실	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사업비	27.9억원	3억	7.3억	3억	17.8억

□ 법인경영의 성과,애로사항,대응방향

	한국버섯조합	용해농산	대관령 영농조합	파평영농조합	천하영농조합
법인화의 성과	소득,인력확보	자금조달	인력확보 사회적 신용	소득, 인력, 사회적 신용	자금조달
법인화문제점	경영관리 자금조달	자금조달	자금조달, 경영관리	자금조달	자금조달
경영성과	기술개발 규모화	규모화 기술개발	규모화 기술개발	규모화 판로개선	규모화, 경영관리
경영애로	판로확보 자금운용	자금운용	기술개발 자금운용	자금운용	자금운용
경영애로의 대응방향	농협과의 협력 자본유치	자본유치	시설기술도입	농협과의 협력	자본의 유치 농협과의 협력
참여 농협사업	구· 판매사업	판매사업	구· 판매사업	구· 판매사업 시설이용	구· 판매사업
농협 지원희망	경영관리	경영관리	판매대행	경영관리	자본제휴, 경영관리

□ 경영진단 지표

		1999년 사례업체 평균	한국버섯 조합	용해농산	대관령 영농조합	파평 영농조합	천하영농 조합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율	3.7	×	×	×	○	×
	자기자본이익율	15.1	×	○	×	○	×
	총매출이익률	32.0	○	○	○	○	×
	총매출경상이익율	7.6	×	×	×	○	×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1.2	×	×	×	×	○
	자기자본회전율	5.0	×	○	○	×	×
안정성	당좌비율	220.8	○	×	○	×	○
	유동비율	323.5	○	×	○	×	○
	고정비율	333.9	○	×	○	×	×
	고정장기적합율	105.1	○	×	○	○	×
	자기자본비율	35.4	○	×	×	×	×
성장성	순이익증가율	-18.2	○	○	×	○	×
	매출액증가율	36.4	×	○	×	×	×
	총자본증가율	16.9	×	×	×	×	×
	자기자본증가율	16.5	×	○	×	○	○

주: ○표시는 경영지표가 사례업체 평균보다 우수한 경우이며, ×표시는 불량한 경우임.

2 가공형

□ 사례업체의 경영개황

		청북농업회사	소사뜰 영농조합	포천버섯 개발주식회사	현대영농조합
법인형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주사업		쌀가공, 판매, 임차경영, 영농대행	쌀가공, 판매, 임차경영, 영농대행	버섯생산, 가공	양파가공
조합원수		4인	5인	15인	4인
출자액		4억	1억	6억	3억
자기자본액		5.9억	3.2억	15.2억	2.9억
정부지 원사업	시설	농기계, 부대시설	농기계 부대시설	생산·가공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사업비	3.6억	1.4억	20.8억	25.9억

□ 법인경영의 성과, 애로사항, 대응방향

	청북농업회사	소사뜰 영농조합	포천버섯개발 주식회사	현대영농조합
법인화의 성과	자금조달 사회적 신용	소득, 인력, 자금, 사회적신용	자금조달 사회적신용	인재확보 사회적신용
법인화문제점	자금조달 인력확보	자금조달 농협과 갈등	경영관리 자금조달	자금조달 조합원이해
경영성과	사업복합화 규모화	판로개선 규모화	규모화 기술개발	판로개선 기술개발
경영애로	자금운용 경영관리	자금운용	경영관리 자금운용	자금운용 경영관리
경영애로의 대응방향	농협과의 협력	자본유치	자본유치 경영컨설팅	자본유치
참여 농협사업	구매	-	구매, 판매	판매
농협 지원희망	판매, 자본	-	자본, 경영관리	자본, 경영관리

□ 경영진단지표

		1999	청북 농업회사	소사들 영농조합	포천버섯 개발	현대 영농조합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율	3.7	×	×	×	×
	자기자본이익율	15.1	×	×	×	×
	총매출이익률	32.0	×	×	×	×
	총매출경상이익율	7.6	×	×	○	×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1.2	○	○	×	×
	자기자본회전율	5.0	×	○	×	×
안정성	당좌비율	220.8	×	×	×	×
	유동비율	323.5	×	○	×	×
	고정비율	333.9	×	○	○	×
	고정장기적합율	105.1	×	○	×	×
	자기자본비율	35.4	×	×	○	×
성장성	순이익증가율	-18.2	○	○	○	○
	매출액증가율	36.4	×	○	×	○
	총자본증가율	16.9	○	○	×	×
	자기자본증가율	16.5	○	○	○	×

주: ○표시는 경영지표가 사례업체 평균보다 우수한 경우이며, ×표시는 불량한 경우임.

3. 유통형

□ 사례업체의 경영개황

		서운포도 조합	일죽양돈 조합	나주과수 유통조합	새만금유통 조합	선진영농 조합	고양유기농 조합
법인형태		영농조합 법인	영농조합 법인	영농조합 법인	영농조합 법인	영농조합 법인	영농조합 법인
주사업		생산자재 공동출하선 공동	출하선공동 직매장 공동축분처리	공동출하 배급가공	공동출하 매취사업 직판장	농자재공동 구매공동출하, 계약재배 수탁판매	공동출하 수탁판매
조합원수		265인	48인	7인	125인	90인	5인
출자액		2.2억	3억	0.3	5억	1억	1.2억
자기자본액		1.5억	3.8억	0.3	8.2억	8.3억	2.4억
정부 지원 사업	시설	포장재	직판장, 분뇨차량	저온저장고 집하장	포장센터, 집하장, 저온저장고	포장센터, 집하장, 저온저장고	집하장, 저온저장고
	사업비	0.8억	1.9억	3억	10억	6억	2.5억

□ 법인경영의 성과,애로사항,대응방향

	서운포도 조합	일죽양돈 조합	나주과수 조합	새만금유통 조합	선진영농 조합	고양유기농 조합
법인화의성과	소득 사회적신용	소득 사회적신용	인력확보 사회적신용	소득, 자금 사회적신용	소득, 자금 사회적신용	소득
법인화문제점	경영관리 조합원이해	경영관리 자금조달	자금조달 업무책임	조합원이해 자금조달	자금조달 인재확보	자금조달 조합원이해
경영성과	판로개선 기술개발	판로개선 기술개발	판로개선 규모화	판로개선 규모화	판로개선 규모화	판로개선 경영관리
경영애로	판로개선 자금운용	판로개선 자금운용	자금운용 규모화	기술개발 자금운용	판로개선 자금운용	판로개선
경영애로의 대응방향	시설도입 자본유치	농협과의 협력	시설도입 출자증액	시설도입 출자증액	시설도입	시설도입 규모확대
참여농협사업	구매사업	-	구매, 판매	구매, 판매	구매	구매
농협지원희망	시설이용	자본, 경영관리	자본	기술, 자본	시설, 자본	-

□ 경영진단지표

		1999	서운포 도조합	일죽양 돈조합	나주과 수조합	새만금 유통조합	선진영 농조합	고양 유기농 조합
수 익 성	총자본경상이익율	3.7	×	○	×	○	○	○
	자기자본이익율	15.1	×	×	×	×	×	○
	총매출이익률	32.0	×	×	○	×	×	×
	총매출경상이익율	7.6	×	×	○	×	×	×
활 동 성	총자본회전율	1.2	×	×	×	×	○	○
	자기자본회전율	5.0	○	×	×	×	○	×
안 정 성	당좌비율	220.8	○	○	×	×	○	×
	유동비율	323.5	○	○	×	×	○	×
	고정비율	333.9	○	○	×	○	○	○
	고정장기적합율	105.1	○	○	×	○	○	○
	자기자본비율	35.4	○	○	×	○	×	○
성 장 성	순이익증가율	-18.2	-	×	○	○	○	×
	매출액증가율	36.4	-	×	×	○	○	×
	총자본증가율	16.9	-	×	×	○	×	×
	자기자본증가율	16.5	-	×	×	○	×	○

주: ○표시는 경영지표가 사례업체 평균보다 우수한 경우이며, ×표시는 불량한 경우임.

<부 록 2> 농업법인 사례조사표

I. 사업운영현황과 경영성과

1. 법인설립개황

가. 법인형태: ①영농조합법인 ②농업회사법인(회사유형: _____)

나. 설립년도: _____년

다. 법인의 설립목적

①생산의 규모화 ②영농비용의 절감 ③판매의 개선 ④부가가치 증대

2. 조합원 및 종사자 현황

가. 조합원수

구 분	정조합원	준조합원	계
설립당시			
현재			

*준조합원의요건

나. 종사자현황

직책	년령	참여년도	출자액	비고
(출자자)				
(종업원)				

*종사자의변동요인

3. 출자현황

구분	현물출자	현금출자	계
설립당시			
현재(1999년말)			

*출자증액의 경우 증액방법: ① 이익잉여금의 적립 ② 출자자 확대
 ③ 개별 출자증액 ④ 기타

*개별출자증액의 경우 출자액의 배분: ① 균등 증액 ② 불균등 증액

4. 사업추진현황

가. 참여사업의 내용

구분	주사업 구분	품 목
농업생산 (a)		①쌀 ②기타 식량작물 ③과수 ④채소 ⑤화훼 ⑥특작 ⑦한(육)우 ⑧젖소 ⑨돼지 ⑩닭 ⑪기타()
가공사업 (b)		①쌀 ②기타 식량작물 ③과수 ④채소 ⑤화훼 ⑥특작 ⑦약용 ⑧축산물 ⑨임산물 ⑩수산물 ⑪기타()
유통사업 (c)		①직판장 ②집하장 ③저온저장고 ④창고 ⑤수탁판매 ⑥선과장 ⑦기타
영농대행 (d)		①쌀 ②기타식량작물 ③과실 ④채소 ⑤특작 ⑥기타()
기 타 (e)		①시설장비임대 ②농기계수리 ③관광농원 ④기타()

나. 사업별 추진현황

사업명	사 업 개시년도	추진상황			향후의향		
		축소	현상유지	확대	축소	현상유지	확대

5. 농지 소유·이용현황

단위: 평

구 분		재배작물	경작면적			작업수탁면적
			소유면적	임차면적	계	
논	설립당시					
	현재					
밭	설립당시					
	현재					
과수원	설립당시					
	현재					
계	설립당시					
	현재					

6. 정부 지원사업 현황 및 투자의향

가. 지원사업 수혜실적

연 도	지원사업명	사업비(천원)				융자금 잔액	주사용처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나. 향후 시설 투자계획

사업명	3년내 투자계획 여부	자금소요액	조달방법(%)	
			자기자본	타인자본

7. 재무상태

가. 자산보유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고정자산	기타자산	계
설립시				
현재				

*유동자산은 미수금 및 재고자산

나. 자본 및 부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자기자본	부 채		계
		단기부채	장기부채	
설립시				
현재				

*부채의 장단기 구분은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구분

8. 법인화의 성과와 문제점

가. 법인화의 성과

	성과 만족도			구체적 사유
	만족	보통	불만	
소득측면				
인력확보측면				
사회적 신용측면				
자금조달측면				

나. 법인화의 문제점

	문제점 순위			대응 방향
	1순위	2순위	3순위	
조합원 이해관계				
자금조달				
업무책임				
경영관리비용				
인재의 확보				
지역과의 관계				

9. 경영성과

가. 조수입

과 목	1998년	1999년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이자수입, 잡수입)		
특별이익		
수익합계		

나. 비용

과 목	1998년	1999년
매출원가(직접생산비)		
- 재료비, 광열비		
- 작업료(직접인건비)		
판매관리비(세금, 감가상각비포함)		
- 인건비(간접인건비)		
- 감가상각비		
- 임차료		
- 광고선전비		
- 기타		
영업외 비용(지급이자, 잡손실)		
비용합계		
당기순이익(수입-비용)		

다. 경영성과의 만족도와 향후전망

	만족도				
	아주만족 (아주밝음)	만족 (밝음)	보통 (현상유지)	미흡 (불투명)	불만 (비관적)
현재의 성과					
향후 전망					

라. 경영성과 및 경영애로의 요인

	성과 순위			애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규모화						
기술개발						
판로개선						
자금운용						
사업의 복합화						
경영관리						

마. 경영애로의 대응방향(있는 대로 모두 답하세요)

- ①영농규모확대 ②시설기술도입 ③농협등 관련조직과의 협력 ④자본의 유치
⑤사업전환 ⑥기타()

II. 경영관리 현황(잘함 : ○ 보통 : △ 못함 : ×로 표시)

1. 경영자 기본사항

가. 경영자에 관한 분야

7. 경영자로서 경영이념을 갖고 있고 책임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 ㄴ. 경영방침을 종업원에게 잘 전달하고 종업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
- ㄷ.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 ㄹ. 항상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 ㅁ. 판매액을 늘리기 위하여 무엇이 좋은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 ㅂ. 사업의 채산성을 점검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ㅅ. 경영개선을 위하여 외부의 회의 또는 영농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ㅇ. 동종사업자등 외부 관계자와의 정보교환등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ㅈ. 후계자의 확보와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ㅊ. 지역의 봉사자, 리-더로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 ㅊ.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최신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갖고 있다.()

나. 경영의 기본방침분야

- ㄱ. 경영활동은 장기적인 경영목표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 ㄴ. 생산방침을 세우고 그방침을 생산활동에 잘 반영하고 있다.()
- ㄷ. 판매방침을 세우고 그방침을 생산활동에 잘 반영하고 있다.()
- ㄹ. 구매방침은 생산계획이나 재고관리등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다.()
- ㅁ.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경영체가 있다.()

다. 경영 전체 계획분야

- ㄱ. 경영방침에 기초한 장기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다.()
- ㄴ. 연도 또는 분기별로 단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 ㄷ. 이익계획을 세우고 있다.()
- ㄹ. 자산계획을 세우고 있다.()
- ㅁ. 설비계획을 세우고 있다.()
- ㅂ.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다.()
- 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라. 경영조직등 분야

- ㄱ. 사무 부문의 규모나 능력은 현장과 균형을 취하고 있다.()
- ㄴ. 개인의 직무에 대한 할당은 질적, 양적으로 균형을 취하고 있다.()
- ㄷ. 문서의 정리 보관이 적절하다.()
- ㄹ. 법인에 등기된 사항과 현실이 일치하고 있다.()
- ㅁ. 조합원 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ㅂ. 세무관계의 신고를 충실히 하고 있다.()
- ㅅ. 세무사등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2. 생산에 관한 사항

가. 생산계획등 분야

- ㄱ. 장단기생산계획을 세우며, 생산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정비되어 있다.()
- ㄴ. 생산계획의 입안은 각 부문 관계자가 참가하여 세우고 있다.()
- ㄷ. 생산계획, 자재의 구매계획, 판매계획간의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ㄹ. 필요한 작업량을 추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인원, 기계에 대한 과부족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다.()
- ㅁ. 생산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실적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 ㅂ. 원가구성요소 가운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 ㅅ. 원가절감 및 품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나. 작업관리 분야

- ㄱ. 작업의 표준화(작업자, 작업시간, 조건등)가 되어 있다.()
- ㄴ. 작업자는 매일 작업결과(작업시간, 재료사용량, 생산량등)를 기록하고 있다.()
- ㄷ. 작업개선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
- ㄹ. 작업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ㅁ. 작업도구의 정비와 점검에 노력하고 있다.()

다. 자재구매관리 분야

ㄱ. 자재구매시 시장조사를 충분히하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다.()

ㄴ. 자재의 보관 및 정리는 적절히 하고 있다.()

ㄷ. 재고량은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

ㄹ. 광열 동력의 사용상황 통계를 작성하고 절감대책을 세우고 있다.()

3. 판매에 관한 사항

가. 판매계획

ㄱ. 중·장기의 판매계획을 세우고 있다.()

ㄴ. 판매액의 변동에 대하여 항상 그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ㄷ. 판매계획을 기초로 계획치와 판매실적의 차이를 언제나 비교분석 한다.()

나. 시장조사분야

ㄱ. 합리적인 판매활동을 위해 항상 시장조사와 시장분석을 적극 하고 있다.()

ㄴ. 시장조사에 도움이 되는 농장외부(업계, 관공서), 농장내부(판매, 통계보고서)의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

ㄷ. 시장조사 결과를 판매계획, 판매촉진, 재무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 광고·판매촉진 분야

ㄱ. 광고활동을 하고 있다.()

ㄴ. 광고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

ㄷ.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있다.()

ㄹ. 샘플제공등 판매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라. 영업분야

- ㄱ. 클레임, 상품불량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기록을 남긴다.()
- ㄴ. 고객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기록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 ㄷ. 고객명부는 기록정리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가. 회계조직

- ㄱ.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고 있다.()
- ㄴ. 월차시산표를 작성하고 있다.()
- ㄷ. 재고조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다.()
- ㄹ. 자금조성을 위한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다.()
- ㅁ. 외부의 회계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 ㅂ. 금융기관과는 밀접히 연락을 하고 있다.()
- ㅅ. 경리담당자는 경리실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처리수속을 하고 있다.()

나. 재무구조 분야

- ㄱ. 단기부채는 당좌자산으로 보아 과대하지 않다.()
- ㄴ. 고정자산이 자기자본과 장기차입금의 합계를 넘는 경우가 없다.()
- ㄷ. 외상판매, 재고품, 고정자산투자의 상황은 채산성과 자금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ㄹ. 총판매액으로 볼 때 현재의 외상판매는 과다하지 않다.()
- ㅁ. 자본구성의 비율(자기자본비율)은 적당하다.()

다. 자본운용분야

- ㄱ. 외상판매에 대한 회수관리는 적절하게 하고 있다.()
- 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과잉투자가 아니다.()
- ㄷ. 안정성과 자본의 운용효율관계에 문제는 없다.()

라. 이익 및 비용, 수익관리분야

- ㄱ. 자본이익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 ㄴ. 판매액의 이익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ㄷ. 판매액은 판매계획대로 되고 있다.()
- ㄹ.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 ㅁ. 부문별 수지계산을 하고 있다.()
- ㅂ. 손익분기점을 파악하고 채산관리를 하고 있다.()
- ㅅ. 재무제표에서 얻어진 정보를 경영에 이용하고 있다.()

5. 노무에 관한 사항

가. 노동력 고용방법 분야

- ㄱ. 노동력의 고용인원은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 ㄴ. 노동력의 선발기준은 세워놓고 있다.()
- ㄷ. 작업인부의 모집방법은 적정하다.()

나. 취업규칙분야

- ㄱ. 채용규칙을 정해놓고 종업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 ㄴ. 채용규칙등의 제 규정에 기초하여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
- ㄷ. 년차 유급휴가가 제도화되어 있다.()

다. 급여분야

- ㄱ. 급여규정은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 ㄴ. 봉급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 ㄷ.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 ㄹ. 직원의 직무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

라. 교육훈련분야

- ㄱ. 직원에게 직무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ㄴ. 직원간의 인화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마. 작업인부의 배치

ㄱ. 작업인력을 적지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ㄴ. 작업인력의 의견청취등 대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ㄷ. 작업인력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을 잘 이해시키고 있다.()

ㄹ. 작업인력 상호간의 인화에 노력하고 있다.()

바. 안전·위생분야

ㄱ.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ㄴ.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

ㄷ. 화재예방계획은 되어 있다.()

III.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

1. 정책사업의 평가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만족	보통	불만	
지원조건				
대상자 선정과정				
사후관리				

2. 지역농협과의 관계

가. 농협사업의 참여현황

	이용여부		만족도(이용의 경우)			구체적 내용(만족, 불만의 경우)
	한다	안한다	만족	보통	불만	
구매사업						
판매사업						
공동이용						
사업자금						

나. 대 협동조합과의 협력 가능 부문

	가능성		구체적 방법
	있다	없다	
농협사업의 참여			
자본·기술제휴			
경영관리 지원			

3. 기타 정책건의 사항

<부 록 3>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현황

(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득 전액 면제 - 농지소득외의 소득은 1,200만원까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항) ※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득 전액 면제 -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부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지양도시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부가가치세 면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5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특례규정 제3조)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 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가치세 75%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 2003년12월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부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부가가치세 면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등과 계약재배, 출하, 가공, 판매보관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좌동
	○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66조 제7항)	○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 좌동
	○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67조 제5항)	○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좌동

(출자조합원에 대한 조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양도소득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단, 3년내 출자지분을 양도시에는 세액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 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자분에 한함	○ 양도소득세 면제 - 좌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2항)
○ 배당소득 면제 - 농지소득 배당액은 전액 면제 - 농지소득외 소득의 배당액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2항, 3항)	○ 배당소득면제 - 없음, 원천징수에 의거 소득세 납부
○ 상속세 공제 - 출자 지분 중 농지 : 29,700㎡, 초지 : 148,500㎡, 산림지 : 297,000㎡(조림기간 20년 경과시 990,000㎡)이내인 경우 공제 (상속세법 제1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 상속세 공제 - 없음.

<부 록 4> 일본의 농업법인 조직변경 및 해산수속 매뉴얼

1. 법인의 변경과 등기

가. 법인의 조직변경

○ 법인 정관 기재사항 중 등기사항

- 유한회사 : 상호, 본점 및 지점, 목적, 자본의 총액, 출자 구좌당 금액,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농사조합법인 : 명칭, 주 사무소 및 지점, 사업, 출자총액 및 출자방법, 출자 구좌당 금액,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의 변경사항이 아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사, 감사,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등기의 변경을 해야 한다.

○ 변경등기의 기한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2주간, 지점 또는 보조사무소의 소재지에는 3주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는 회사는 변경사항 마다 필요하지만, 조합은 등록면허세가 없다. 이사의 임기만료에 의해 재임된 경우에도 그 임기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관계기관에 제출

- 등기부 사본 또는 등본외 총회의사록등을 첨부하여 세무서, 현세사무소, 시정촌 및 노동관계, 보험관계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농업생산법인의 경우에는 농업위원회, 농사조합법인의 경우에는 행정청에 제출

도 필요하다.

나. 자본의 증가에 의한 변경

○ 증자하는 경우의 과세

- 증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자자의 출자구수 비율에 따라 증자액을 할당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자구수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할당한 경우에는 그 증자의 권리가 증여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그 법인의 누적이익이 많거나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출자액 이상의 출자지분이 평가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피증자(被贈者) 1인에 연간 60만엔까지는 비과세가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첫째, 1구좌의 지분을 계산한다. 둘째,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지분 1구좌의 평가액이 당초 출자한 1구좌의 평가액을 상회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 할당할 경우에는 상회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서 불입한다.
- 자본준비금의 불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금액 만큼 새로운 출자인수권자가 증여를 받는 것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분계산결과 1구좌의 지분의 평가액이 당초 출자금액을 하회할 경우에는 당초 출자1구좌당 금액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된다.
- 금전출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불입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불입금의 보관증명을 해야하고 자본증가의 변경등기 신청시에 그 불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감사역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법인 대표는 감사역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역의 조사가 필요없다.

- 현물출자자에 할당된 출자구수가 자본의 1/10이하이거나 증가하는 자본액이 1/5이하일 경우
 -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의 가액이 500만엔 이하일 경우
 -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이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그 수입가액이 거래소의 상장 이하 일 때
 -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이 부동산으로 부동산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거 변호사의 인증을 받은 경우
-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의 증자시의 시가가 증자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진 가액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결의에 동의한 사원 및 그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한 대표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단, 현물출자에 대하여 검사역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아닌 사원 및 대표는 그 재산가액 보전 책임을 지지않는다.
- 1구좌당의 지분계산은 상속세법에 기초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대부분 거래상장이 아닌 주식에 해당되고, 평가계산은 평가명세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가. 해산 및 청산 수속의 개요

○ 법인의 해산·청산

- 법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하고 청산한다.
 - 법인 합병의 경우와 같이 해산법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이전시켜, 피 합병법인의 법인격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경우.
 - 법인이 일정의 사업수행의 목적을 종료 또는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이후 청산 또는 파산의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지속하고, 청산 또는 파산수속에 의해 소멸한다.

- 법인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이 되며, 상법 또는 유한회사법, 농협법에서 정하는 청산수속을 밟으며, 그 수속이 완료되었을 경우 법인격이 소멸된다.

○ 해산의 수속

-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 존립시기의 완료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유, 총회의 결의, 합병, 파산, 해산명령, 조합원의 감소

나. 청산인

○ 청산인의 업무

- 법인은 해산에 의해 “청산중 법인”이 되며, 합병,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무정리, 미수채권의 확정,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환가 및 분배등을 행하기 위하여 청산인을 두어야 한다.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재산 처분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낙을 얻는다.
- 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이상의 공고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최고기간”내에 그 청구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 해산의 통지·공고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 이사는 지체 없이 전사원·조합원에 대하여 해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 청산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청산인은 최고신청의 최고수속을 해야 한다. 이 공고는 상법의 규정에 의거 최저 3회이상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3일 간격).

다. 해산등기의 수속

- 법인이 해산할 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 이내에 지점 또는 종속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청산사무를 실시하는 대표권을 가진자로서 청산인의 등기도 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명령에 의해 해산시킨 경우에는 그 해산의 등기는 행정기관의 촉탁에 따라 실시한다.
- 회사의 해산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본점소재지에서는 3만원, 지점소재지에서는 9천엔이며, 조합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없다.
- 필요서류
 - 본점 : 회사 또는 조합해산등기신청서, 총회의사록, 청산인 자격을 인정하는 서면, 위임장
 - 지점 : 등기신청서, 등기부 사본, 위임장
- 청산인의 등기
 - 청산인의 선임은 해산일로부터 본점은 3주간, 지점은 4주간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날로부터 본점은 2주간, 지점은 3주간 이내에 등기한다. 회사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본점·지점 구별 없이 9천엔이다. 조합의 경우는 필요 없다.
 - 등기 필요서류는 본점의 경우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총회의사록, 인감이며, 지점의 소재지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라. 정산종료 수속

- 정산의 수속
 - 정산사무를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총회에 제출하여승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정산은 종료된다.

○ 정산의 종료등기

- 정산이 종료되었을 때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결산서가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청산인이 정산종료등기를 한다. 등록면허세는 회사의 경우 2,000엔, 조합은 필요 없다.

마. 해산의 경우 세무신고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신고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해산사업년도의 확정신고, 정산사업년도의 예납신고, 잔여재산분배예납신고, 청산확정신고.

- 이 중에 정산사업년도의 예납신고는 청산수속이 단기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다. 또, 잔여재산분배예납신고는 출자자에 분배할 재산이 없으면 필요 없다.
-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준 배당”등의 세무문제나 “채권처리”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충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해산시의 세무신고

- 해산의 경우는 해산일까지는 통상의 사업년도 종료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결산을 행한다. 해산일까지 2개월 이내에 총회에 결산서의 승인을 얻어 법인세의 확정신고를 한다. 이 경우는 통상의 사업년도의 신고서식을 사용한다.

○ 청산중에 사업년도가 도래했을 때의 세무신고

-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법인의 사업년도는 그대로 계속된다. 따라서 청산이 종료하기 전에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산사업년도예납신고”를 실시한다.

○ 청산종료의 세무신고

잔여재산을 처리하여 청산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청산인은 결산사무 보고서 및 청산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청산이 종료된다.

<부 록 5> 외국의 가족법인제도

1. 프랑스의 GAEC 와 EARL

<농업경영법인의 추이>

단위: 1,000호, %, ha

법 인 형 태	1970년	1979년	1988년	1995년
실수(구성비)				
GAEC	3.9(49.4)	15.3(39.1)	37.7(59.6)	43.7(47.3)
EARL	-	-	1.5(2.4)	29.7(32.2)
SCEA	4.0(50.6)	5.6(14.3)	9.9(15.6)	12.8(13.9)
임의조직	-	18.2(46.5)	14.2(22.4)	6.1(6.6)
합계	7.9(100.0)	39.1(100.0)	63.3(100.0)	92.3(100.0)
1호당 평균경영면적				
GAEC	76	80	84	106
EARL	-	-	65	84
SCEA	67	77	91	98
임의조직	-	54	56	57

- 1955년에 불과 14ha에 지나지 않았던 프랑스의 1호당 평균 경영면적은 그 후 구조정책·경영정책의 추진으로 1995년에는 38ha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규모확대의 진전은 70년대 후반 이후, 청년 농업자의 자립이나 가족경영의 실질적인 계승수단으로서 도입된 농업경영법인제도의 도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1970년에 불과 7,900호(농업경영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밖에 없었던 법인은 그 후 해마다 증가하여 1995년에는 9만 2,300호(12.6%)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의 농업경영법인은 가족법인형태의 GAEC(농업공동경영집단)와

EARL(유한책임농업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외에 유통법인으로서 SCEA(농업경영민사조합), 등의 법인 형태가 있다.

- 이러한 것들은 가족경영과 비교해서 경영규모가 크고, 효율적인 농작업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최근의 설립추세를 보면 GAEC는 정체되고, EARL이 급증하는 경향에 있음, 이에 비해 SCEA는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

가. GAEC

- GAEC는 1962년에 의해 창설된 법인형태로서 가족경영의 법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성원이 제공하는 토지나 생산자재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공동작업에 의한 합리적인 경영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경종 및 유축복합경영부문에서 많이 설립되고 있다.
- 1995년 말 현재 GAEC는 44천 개소, 그 중 부자 2명의 GAEC는 40%, 양친과 자녀 3명 이상의 GAEC는 27%로, GAEC의 2/3 이상이 부자 GAEC임. 여기에 형제 GAEC 24%를 더하면 90% 이상은 가족 GAEC이고, 타인 GAEC는 극히 적음
- 구성원의 요건 ; 성년자(18세 이상)이고, 농업자로 각종 농작업에 종사하는 자
- 구성원의 수 ; 2인 이상 10인 미만이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두 명은 불인정
- 단, 1982년 민법 개정에 의해 배우자의 공유재산을 상호 출자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자가 구성원으로 가담하는 GAEC가 증가하고 있음.
- 경영상의 특징은 경영전반을 대상으로 한 완전 GAEC와 어느 특정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GAEC를 선택할 수 있음. 구성원은 농작업이나 경영사무등 어떠한 형태로든 GAEC의 일에 참여해야 만 하며, 출자자가 각각의 경영주로서 간주되고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제상에서도 독립된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 각각이

독립경영주와 같은 자격을 갖지만, 형식상 그 중 1명이 경영주가 된다.

- 예를들면, 부모와 자녀(후계자)가 GAEC를 설립하면 경영주가 두 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보조금도 각각 두 명에게 나오며, 세금도 각각의 경영에 부과됨.

○ 정부는 이러한 부자간의 GAEC의 설립한 경우 후계자인 청년농업자에게 DJA(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을 지원하여 법인 출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한 사람이 독립된 경영주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함.

- GAEC의 구성원은 독립경영의 경영주와 동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녀는 지금까지 경영주인 부모 밑에서 가족노동력으로서 일한 급료를 GAEC결성 때에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고, 여기에 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을 출자금에 더할 수 있음. 현재 부자 GAEC의 1/3은 청년농업자자립조성금 수익자임.
- 부친의 은퇴(법정연령 60세)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농을 계승할 아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영 독립에 대비하여 공동경영에 참여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비축함으로서, 농업경영자산의 세분화를 방지하고 경영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임.

나. EARL

○ EARL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심각하게 된 가족경영의 부채정리 문제에 대처하고 경영자산과 가족의 개인자산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정비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GAEC를 계승하는 조직으로서 창설되었다.

- GAEC에 참여한 영농주의 부친이 영농은퇴시점에 이르게 되자 영농의 후계자인 아들이 부친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상당액의 자본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이들의 부채문제 해결이 당면과제로 등장하면서, 1985년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유한회사 형태의 EARL을 창설하게 되었음.

- EARL의 특징은 구성원이 한 사람, 부부 두 사람, 또는 경영자 1인과 비경영자 1인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고, part-time 취업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부자간 GAEC를 체결한 아들은 부친의 은퇴 후에도 EARL의 형태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GAEC 해산 후에 발생하는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도 있음.
 - 더욱이 은퇴한 부친은 비경영자로서 EARL에 남게되고, 출자지분을 조금씩 아들에게 양도해서 추가소득을 획득할 수도 있음.
 - 때문에 1992년에는 GAEC 해산 총 수의 반 이상이 EARL로 전환했음

2. 일본의 가족법인제도

- 일본은 1990년대에 주창된 “신농정”에서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과 법인화의 추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지역농업은 가족경영을 중심으로 농업생산법인, 농업서비스조직등 다양한 주체가 상호 보완하여 발전되어야 하며, 경영체의 법인화는 경영체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신농정에서의 법인화는 조직경영체의 법인화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경영체의 법인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가족경영 법인화의 유리성으로는 가족내의 노동관계나 역할분담, 특히 여성 역할의 명확화, 경리의 명확화, 고용노동자의 복지증진, 경영관리능력, 자금조달력, 신용력 등의 충실화 등을 들고있다.
- 가족경영의 법인화는 “유한회사제도”를 통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한책임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소수의 가까운 친인척간에 만드는 회사로서 1~50인까지 사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원이외에는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또, 유가증권화, 공모나 사채발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농사조합과는 달리 사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1인만으로 회사를 세울 수 있음. 임원으로 사원이외의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함.
- 자본금은 300만엔 이상이며, 농사조합법인처럼 고용이나 출자배당에 대한 제한은 없음. 원칙적으로 1주1표제이지만, 출자배당제나 정관으로 이밖의 방법을 정하더라도 가능함.

C2000-44

농업법인경영의 발전방향과 정책개선방안 연구

등록 제6-0007호(1979. 5. 25)

인쇄 2000년 12월 발행 2000년 12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965-8401

인쇄 (주)문원사 02-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